2025년 지자체 녹색구매 지원사업

# 녹색구매 역량강화 교육

2025.05.23.

사업주관: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수행: RESET

# CONTENTS

2025 서울특별시 공공녹색구매 역량강화 교육


Chap. 01

## 의무구매 개요

1. 목적 및 책무
2.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3. 녹색제품 의무구매 법적근거 및 체계도
4.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

Chap. 02

## 녹색제품 구매절차

1. 녹색제품 정보 확인 방법
2. 녹색제품 구매 방법

Chap. 03

## 구매실적 등록방법

1. 에코스퀘어 개요
2. 녹색구매 추가
3. 녹색구매 인정
4. 기존실적 예외

# 01

1. 목적 및 책무
2.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3. 녹색제품 의무구매 법적근거 및 체계도
4.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사업자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 사용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 사용을 위한 노력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인력양성 적극 추진

### 국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령

※ 2025년도 기준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대상기관) 최상위기관 926개|하위·소속기관 포함 5만여개

- 국가기관(56) 및 지방자치단체(245), 교육자치단체(193)
- 지방공기업(47), 지방의료원(30)
- 공기업(32), 준정부기관(55), 기타공공기관(240)
- 지자체 출연연구원(16), 특수법인(8)

(2025.01.01. 시행)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의 **다음 각 목의 법인**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제도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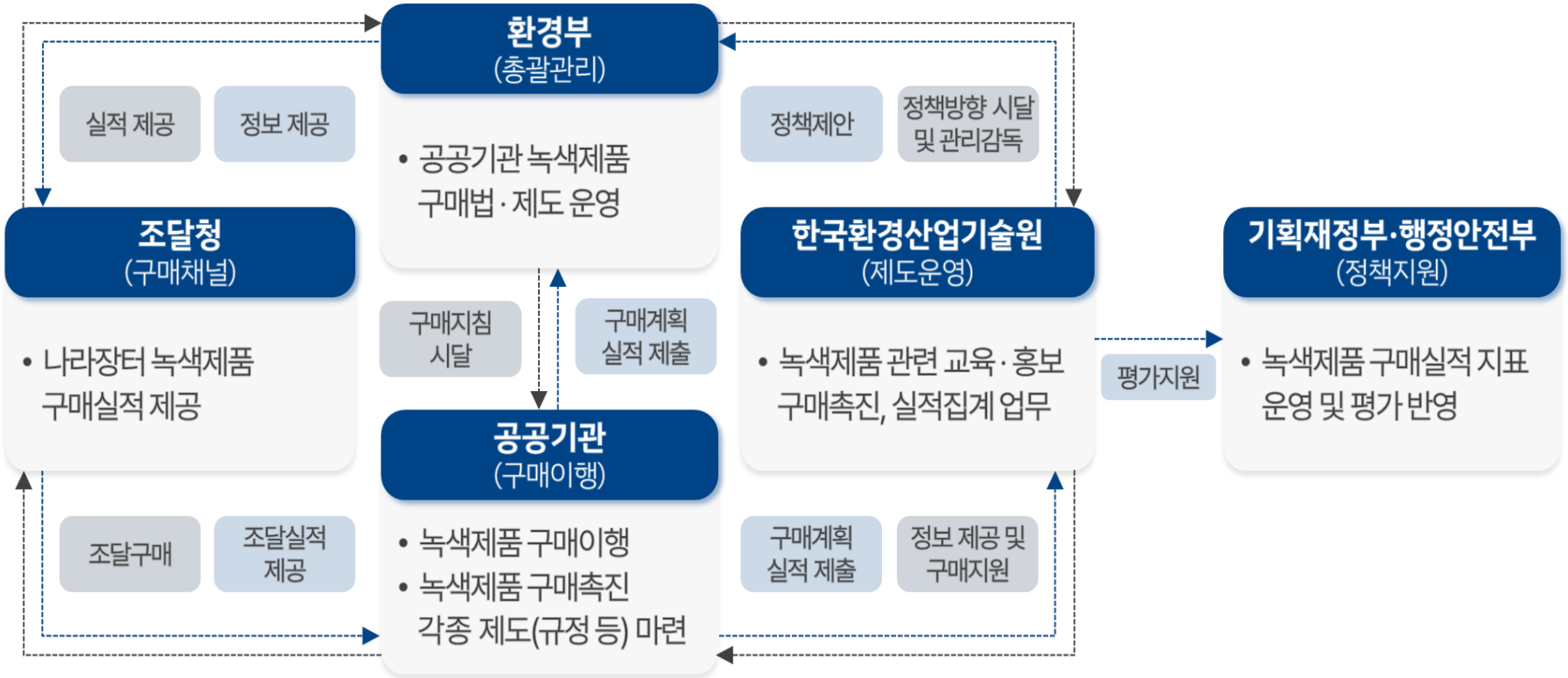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 해당하는 환경표지제품 / 저탄소제품 / 우수재활용제품

- **녹색제품 :** 정부조달최소녹색기준(X), 고효율에너지제품(X), 녹색기술인증(X)
- **녹색제품은 기업단위가 아닌 '모델단위'로 인증** (인증기간, 모델명 확인 필요)

| 구분 | 환경표지제품 | 저탄소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
| 인증마크 | 친환경 환경부 | CO2 탄소발자국 000g 환경부 저탄소 | Good Recycled |
| 운영목적 |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
| 대상품목 | 사무기기 / 가전제품 / 생활용품 등 169개 제품군 | 의료기기 / 의약품 /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한 모든 제품 | 폐지 / 폐고무 / 폐플라스틱 / 폐목재 등 13개 분야 |
| 인증제품 수 | 4,813 업체 / 18,419(기본)제품 ('25.4월 기준) | 290개 업체 / 1,191개 제품 ('25.3월 기준) | 337개 업체 / 413개 품목 ('25.4월 기준) |
| 인증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 홈페이지 | ecosq.or.kr | ecosq.or.kr | buygr.or.kr |

01

###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물품직접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 녹색장터+(greenproduct.co.kr)
- 녹색장터 (greenproduct.kr)
- 그 외 온/오프라인 쇼핑몰

02

###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물품이 구매되는 경우

- 청소용역 계약 시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세제나 화장지, 인쇄용역 계약 시 사용되는 인쇄용지 등이 해당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사용하는 토너 카트리지, 프린터 또는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가 해당

03

###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창호 등 건설자재의 경우 녹색제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함

**※ 녹색제품 여부 확인 사이트(공통)**

- 에코스퀘어
  (ecosq.or.kr-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 GR제품정보시스템(buygr.or.kr)
- 목록정보시스템(goods.g25b.go.kr)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을 통해 **용역업체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필요**

계약상대방에게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행 여부의 관리·감독** 필요

# 02

1. 녹색제품 정보 확인 방법

2. 녹색제품 구매 방법

## 녹색제품 품질(참고)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순히 친환경적이라는 것뿐 아니라 물리적 성능, 내구성,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녹색제품의 사용 시 초기비용은 유사하지만 수명주기비용(LCC)의 경우 최대 25% 까지 절감됨

**<녹색제품 인증 아스콘 vs 일반 아스콘: 품질 및 성능 비교>**

| 항목 | 녹색제품 인증 아스콘 | 일반 아스콘 | 설명 및 근거 |
|---|---|---|---|
| 재료 구성 | 폐기물(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활용 첨가제 포함 | 순수 원유 기반 아스팔트 사용 | 자원순환형 아스팔트로 탄소배출 및 자원소비 최소화 |
| 온도 저감 효과 | 저온 혼합형: 120~140°C | 고온 혼합형: 160~180°C | 제조·시공 시 온실가스(GHG) 배출량 30% 이상 감소 |
| 내구성 | 동결융해·소성변형·균열 저항성 강화 | 기온변화에 민감해 반복 보수 필요 | 환경표지 인증 시 3대 물리성 평가 통과 필수 |
| 수명 주기 비용(LCC) | 유지보수 주기 길고 유지관리 비용 낮음 | 주기적 유지보수 필요 → 총비용 증가 | 국토부 표준규격 연계 LCC 절감효과 입증 사례 다수 |
| 환경 유해성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 배출 저감 | 시공 시 유해가스 다량 발생 | 작업자 및 주민의 건강안전 측면에서 유리 |
| 기타 특성 | 소음저감형, 투수형 등 다양한 기술 융합 가능 | 기능 제한적 | 기능성 복합소재로 확장성 우수 |

* 출처: ㈜영흥산업환경 홈페이지

# 녹색제품 정보확인

⇨ 녹색제품 인증의 유효성 확인은 필수적.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정보 직접 확인

## 에코스퀘어

**[Ecosq.or.kr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 에코스퀘어) - 환경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 확인]**

① **웹사이트 접속**: ecosq.or.kr 주소로 접속

② **인증정보 검색 메뉴 찾기**: 웹사이트 내에서 " 친환경녹색진흥 " , " 녹색제품 정보 " , " 녹색제품 인증현황 " 메뉴 확인

-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저탄소제품인증', 'GR인증', '환경표지인증제품' 확인 가능
- 월말에 1회씩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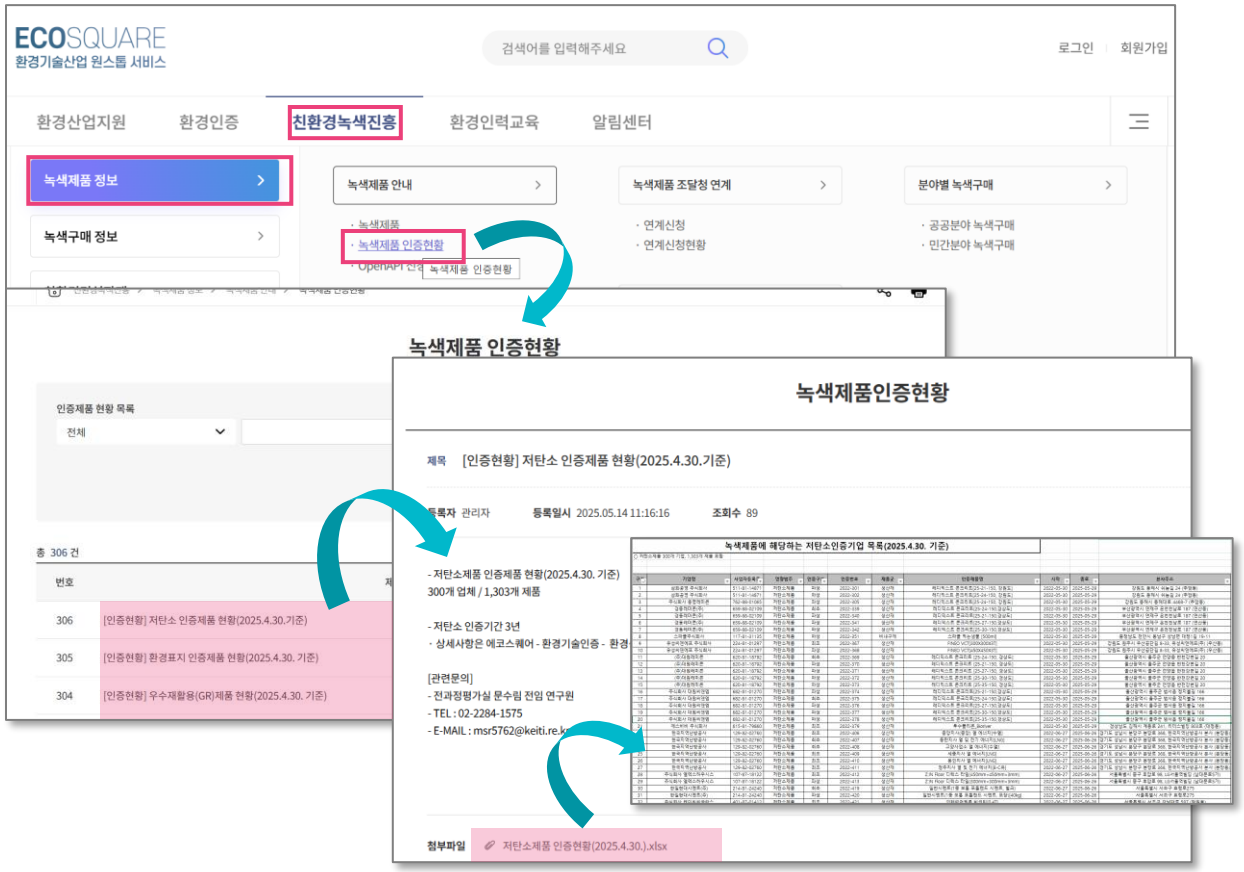

# 녹색제품 정보확인

⇨ 녹색제품 인증의 유효성 확인은 필수적.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정보 직접 확인

##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gr.or.kr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 GR마크 인증 확인]**

① **웹사이트 접속**: gr.or.kr 주소로 접속

② **GR인증제품 검색 메뉴 찾기**: 웹사이트 내 "우수재활용제품(GR)", "자료실" 등의 메뉴를 이용. GR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신청 양식 등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③ **검색 결과 확인**: 최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현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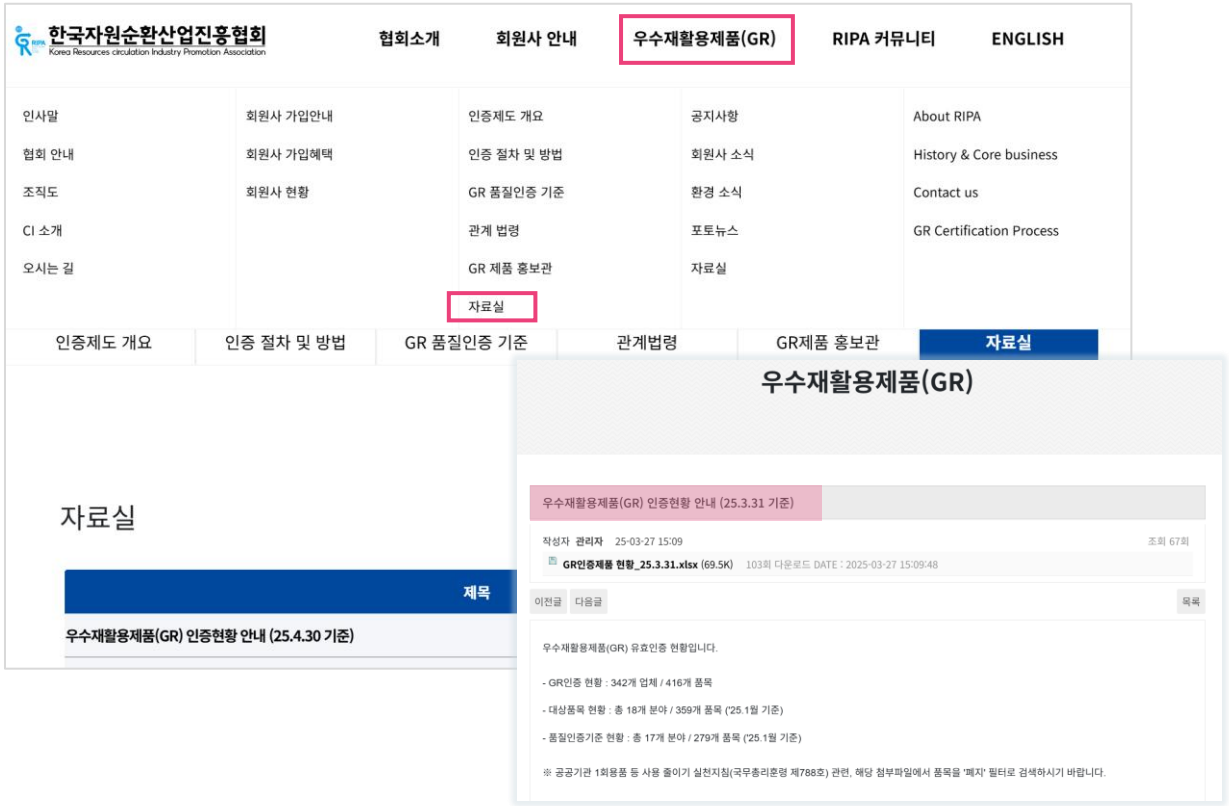

# 녹색제품 정보확인

⇨ 녹색제품 인증의 유효성 확인은 필수적.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정보 직접 확인

## 목록정보시스템

**[https://goods.g2b.go.kr (목록정보시스템) - GR마크, 저탄소제품, 환경표지인증]**

① **웹사이트 접속**: https://goods.g2b.go.kr 주소로 접속

② **검색 메뉴 찾기**: 웹사이트 내 [품목검색] 클릭 → [연계인증명] 을 통하여 GR인증, 저탄소제품, 환경표지 제품 선택하여 확인

③ **검색 결과 확인**: 최신 "GR인증, 저탄소제품, 환경표지 제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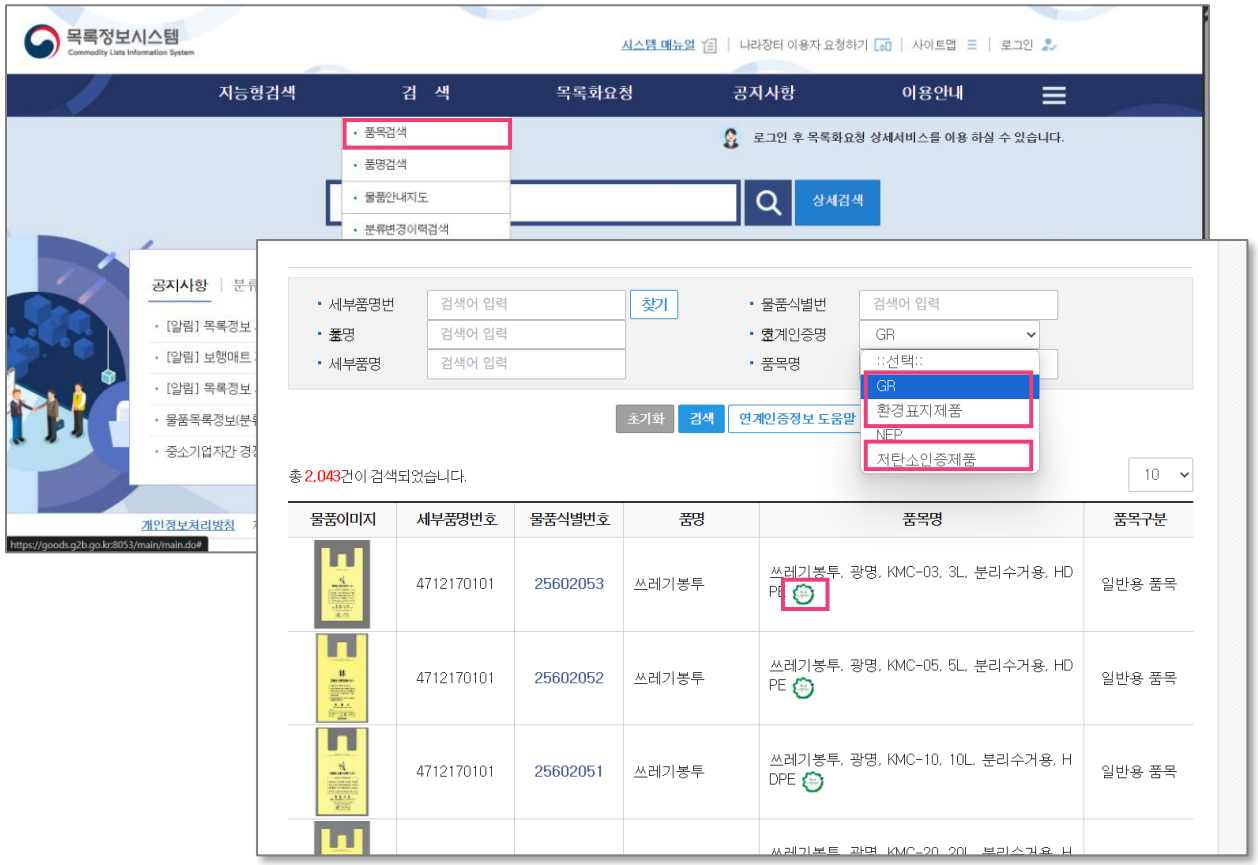

# 직접적인 물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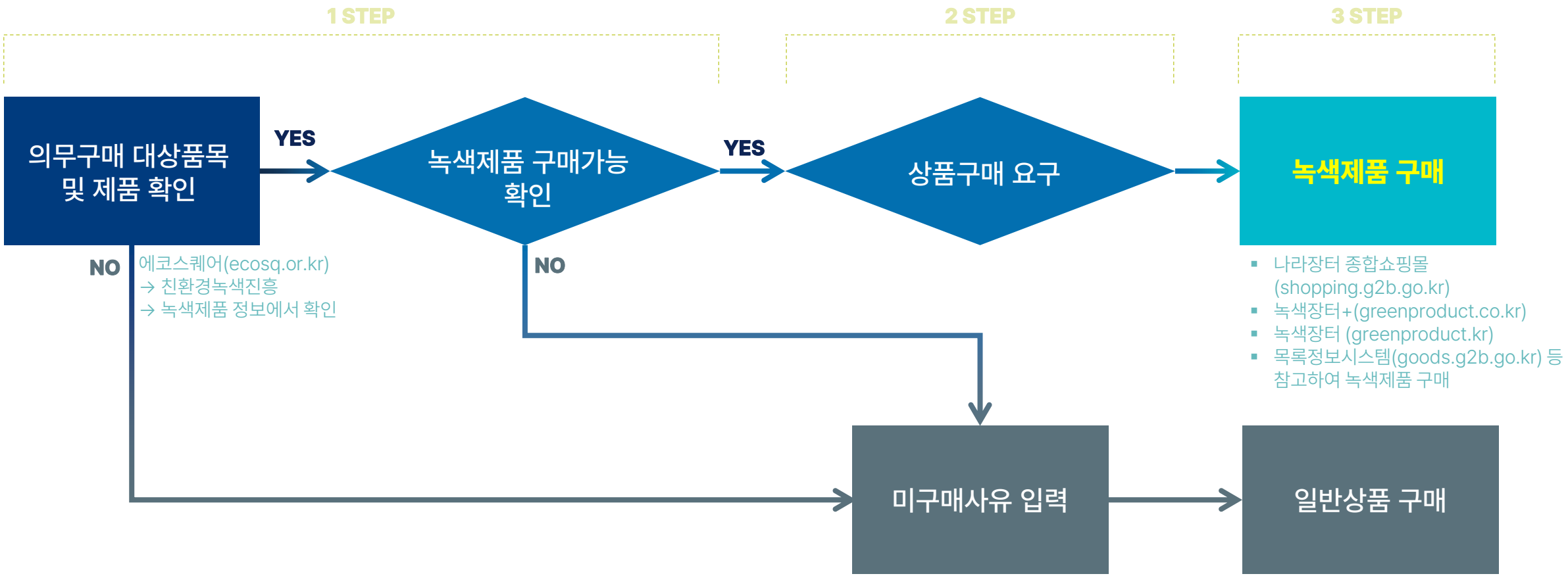
1 STEP
2 STEP
3 STEP
의무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YES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YES
상품구매 요구
녹색제품 구매
NO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제품 정보에서 확인
NO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녹색장터+(greenproduct.co.kr)
녹색장터 (greenproduct.kr)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 등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미구매사유 입력
일반상품 구매

# 직접적인 물품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녹색물품]

1. [녹색물품] 클릭
2. 카테고리 검색
3. 환경표지 제품, GR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 클릭

## [구매하는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검색되지 않는 경우]

1.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녹색제품 검색
2. 총액 계약으로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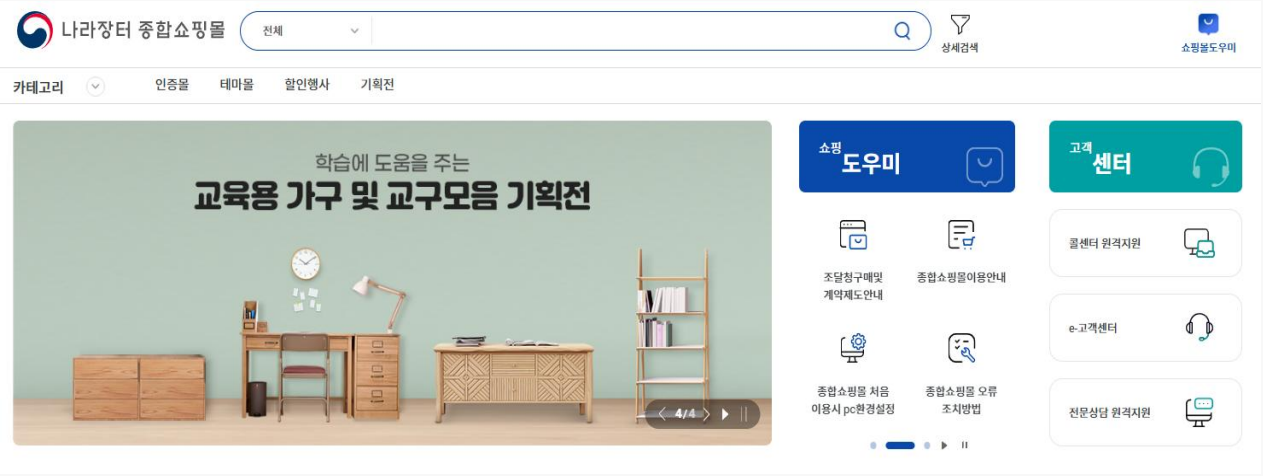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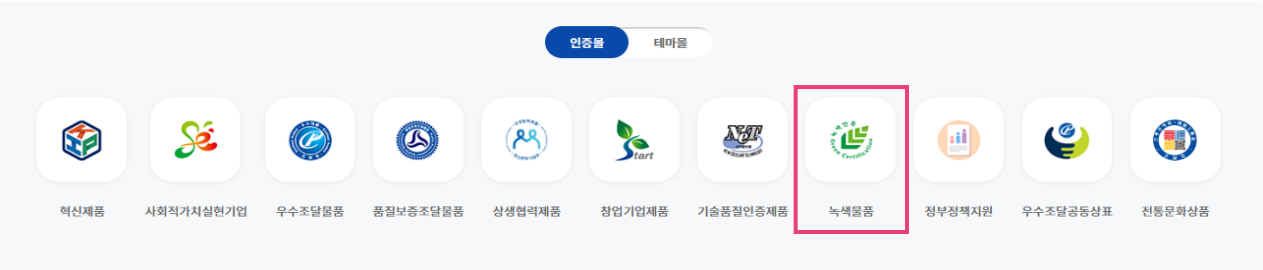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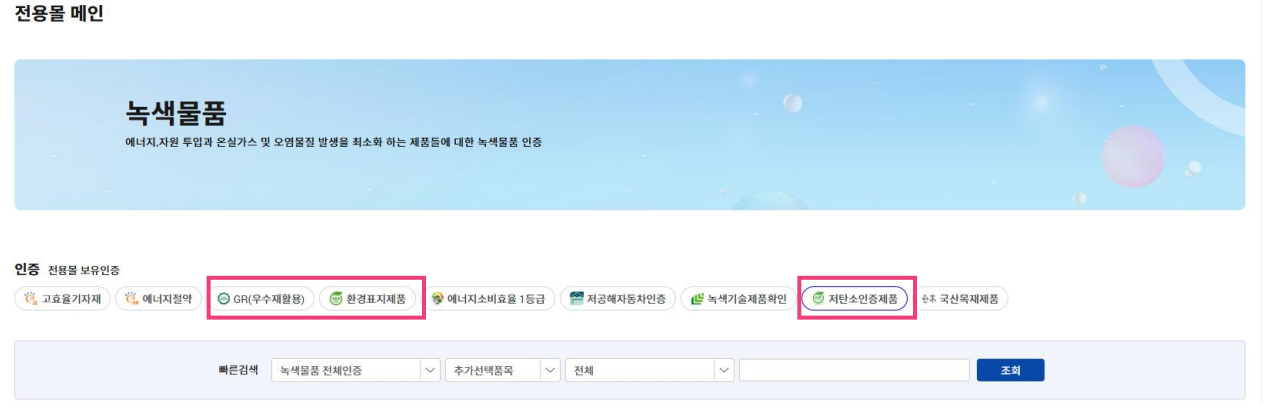

# 직접적인 물품 구매 : 목록정보시스템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1. [품목검색] 클릭
2.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G2B분류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세부품명번호], [연계인증명] 해당 항목 선택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G2B분류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G2B분류번호를 모르는 경우]

1. [물품식별번호] → [세부품목번호] 입력
2. [연계인증명] 의 해당 항목 선택(GR, 환경표지, 저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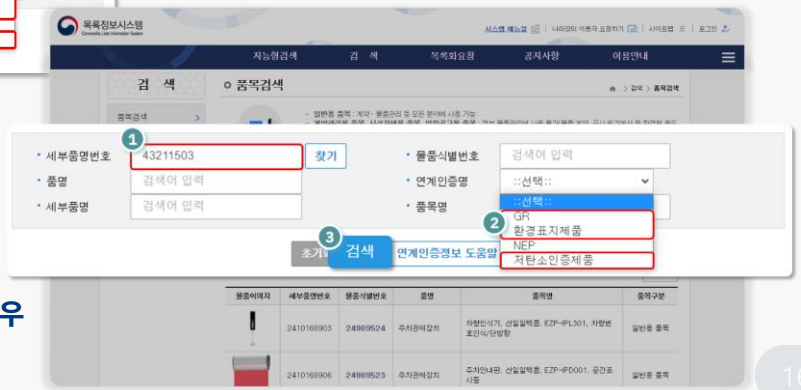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G2B분류번호를 모르는 경우

# 직접적인 물품 구매 : 녹색장터

**[에코스퀘어] → [친환경녹색진흥] →[녹색장터]**

1. [녹색장터] 클릭
2. 카테고리 검색
3. 환경표지 제품, GR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 클릭

주식회사 녹색사랑

www.greenproduct.kr/Mall

이용문의 1588-1276

그린주의

www.greenproduct.co.kr

이용문의 1544-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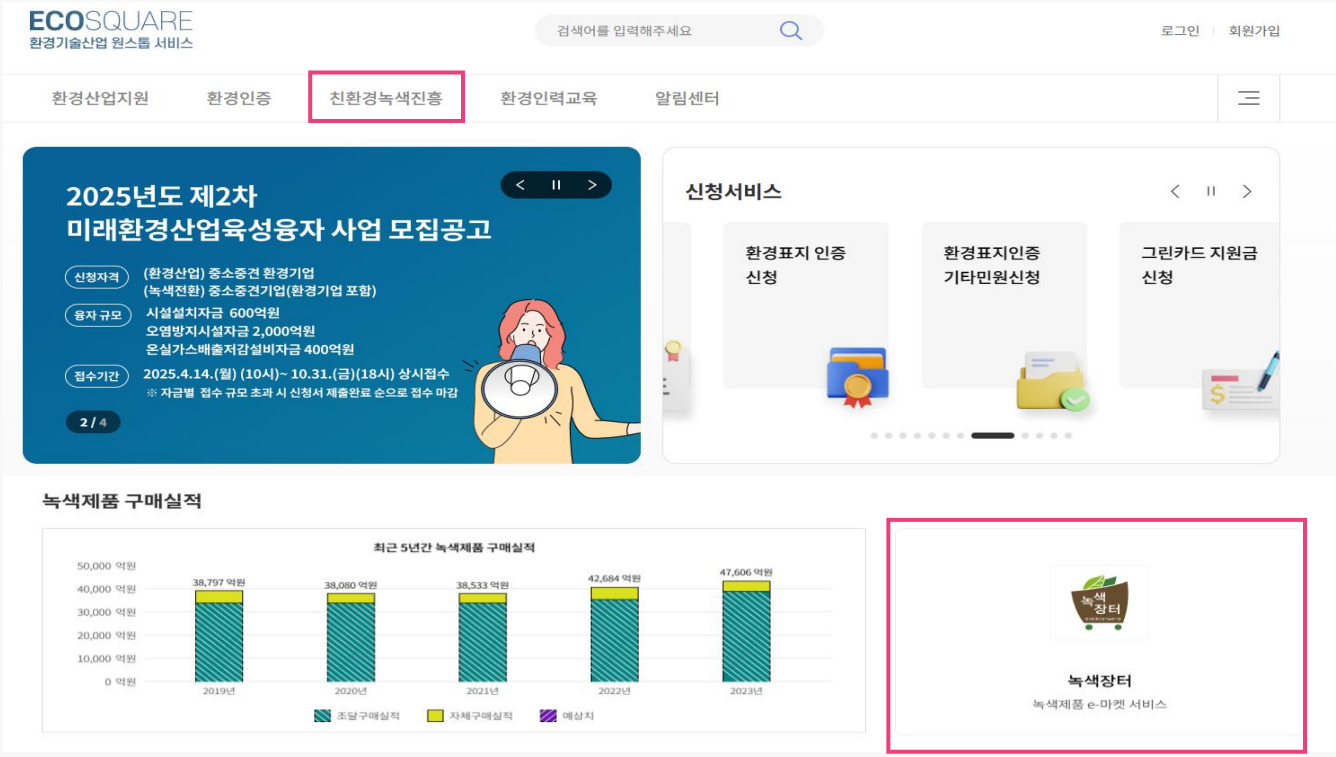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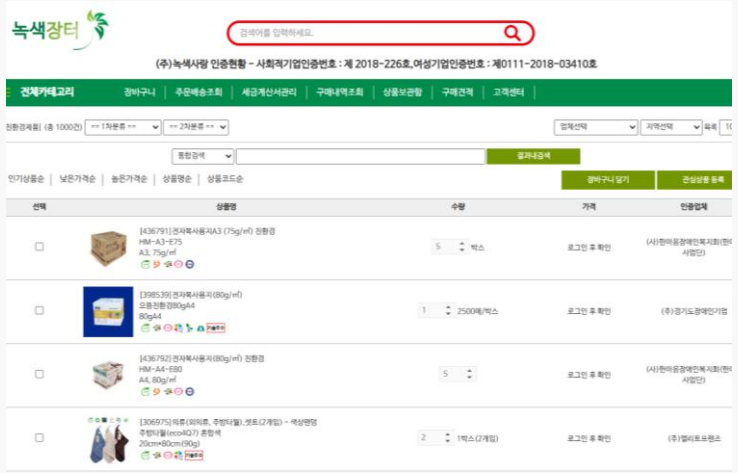

# 직접적인 물품 구매

### <물품 직접구매 시 녹색제품 관련 확인 및 증빙서류>

| 문서 종류 | 목적 및 중요성 | 출처(공급업체/내부) | 주요 확인사항 |
|---|---|---|---|
| 녹색제품 인증서 사본 | 구매 제품이 적법한 녹색제품임을 증명 | 공급업체 | 인증 종류, 인증번호, 업체명, 정확한 제품명 및 모델명, 유효기간, 인증기관, 인증서 위변조 여부 (필요시 원본대조) |
| 세금계산서 | 구매 거래 사실 및 금액 증빙, 품명/모델명 확인 | 공급업체 | 발급일자,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품명 및 모델명 (인증서와 일치 여부), 공급가액, 세액 |
|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 | 실제 물품 수령 및 규격 확인 | 공급업체 | 납품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세금계산서 및 계약내용과 일치 여부) |
| (내부용) 녹색제품 구매확인서 | 내부 구매 승인 및 녹색구매 실적 관리 근거 | 내부작성 | 구매 부서, 구매 일자, 제품 정보, 인증 정보, 관련 증빙 첨부 여부 |
| | | 공급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생산 공장 정보,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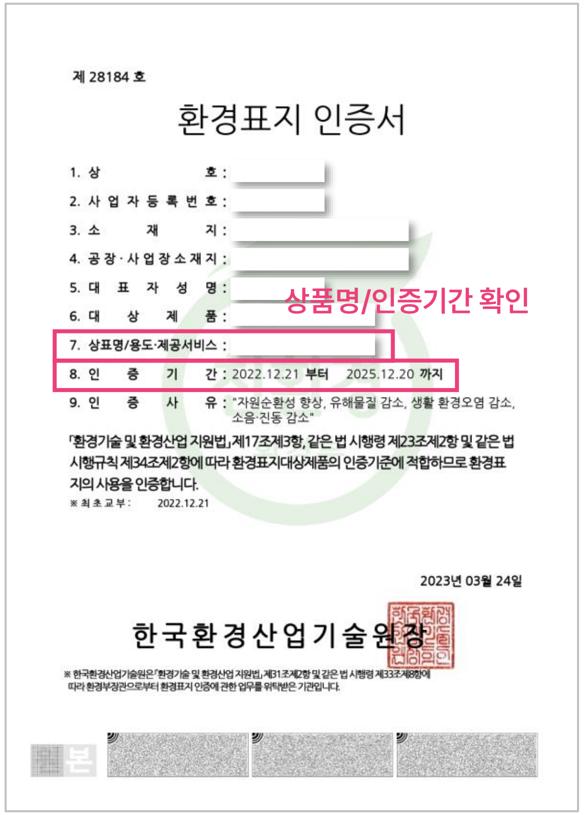
제 28184 호

환경표지 인증서

1. 상 호 : [blank]
2.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blank]
3. 소 재 지 : [blank]
4. 공 장 · 사 업 장 소 재 지 : [blank]
5. 대 표 자 성 명 : [blank]
6. 대 상 제 품 : [blank]
7. 상표명/용도·제공서비스 : [blank]
8. 인 증 기 간 : 2022.12.21 부터 2025.12.20 까지
9. 인 증 사 유 : "자원순환성 향상, 유해물질 감소, 생활 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 최 초 교 부 : 2022.12.21

2023년 03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책번호 1 권 2 호 / 일련번호 1-1

공급자: 등록번호 123-01-12346 / 상호(법인명) OO상사 / 성명 백두산 인 /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업태 서비스 / 종목 인터넷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123-01-12345 / 상호(법인명) OO기업 / 성명 홍길동 인 /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업태 서비스 / 종목 온라인정보제공

작성 2015 6 2 / 공란수 5 / 공급가액 500000 / 세액 50000

| 월 | 일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 3 | 23 | A-001 부품 | AA | 10 | 10,000 | 100,000 | 10,000 | |
| 3 | 24 | A-002 부품 | AA | 20 | 10,000 | 200,000 | 20,000 | |
| 3 | 25 | A-003 부품 | AA | 10 | 10,000 | 100,000 | 10,000 | |
| 3 | 26 | A-004 부품 | AA | 10 | 10,000 | 100,000 | 10,000 | |

합계금액 550,000 / 외상미수금 15,000 / 이 금액을 영수 함

22226-28131일 '96.3.27승인 / 인쇄용지(특급)34g/m2 182mmx128mm

품목명 = 인증제품 상품명

※ 세금계산서 상 일자가 인증기간 내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 직접적인 물품 구매

⇨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발주서에 녹색제품 구매 및 관련 증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해당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

## 녹색제품 공급 및 증빙 의무조항(예시)

**기본원칙(서울특별시 예규 제3조 참고)**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제 00조 (녹색제품 공급 및 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명칭, 예: 사무용 복사기], 모델명 [모델번호]가 [녹색제품 인증 종류, 예: 환경표지] 인증제 [인증번호]를 보유한 유효한 녹색제품임을 보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해당 녹색제품 인증서 사본(유효기간 명시 필) 및 본 계약 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제조사 증명서, 제품 카탈로그 등)와 세금계산서(품명, 모델명 명기)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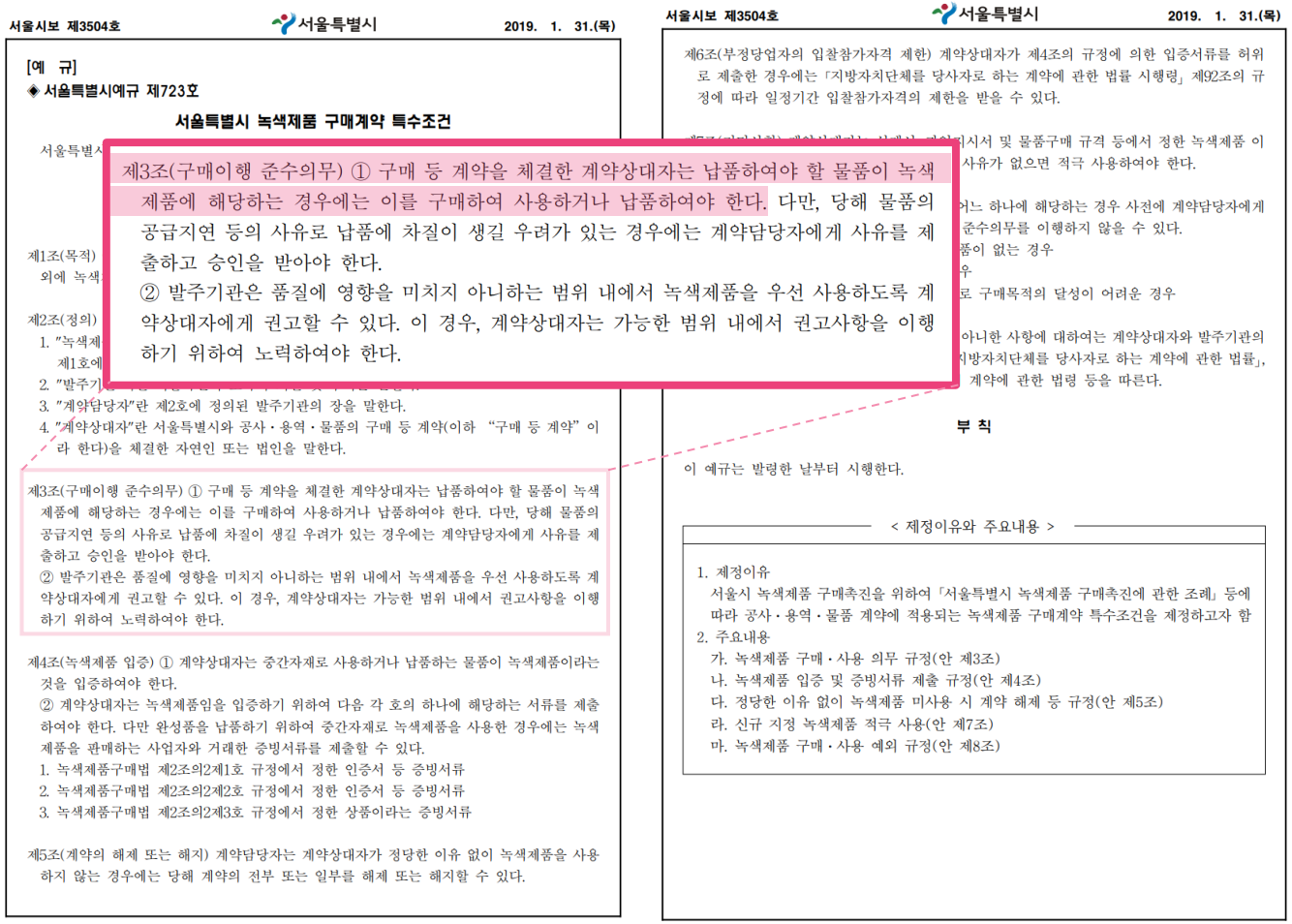
서울시보 제3504호 서울특별시 2019. 1. 31.(목)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 제723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외에 녹색

제2조(정의)
1. "녹색제
제1호에
2. "발주기
3. "계약담당자"란 제2호에 정의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서울특별시와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등 계약(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보 제3504호 서울특별시 2019. 1. 31.(목)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
사유가 없으면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품이 없는 경우
우
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적용되는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사용 의무 규정(안 제3조)
나. 녹색제품 입증 및 증빙서류 제출 규정(안 제4조)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 미사용 시 계약 해제 등 규정(안 제5조)
라. 신규 지정 녹색제품 적극 사용(안 제7조)
마. 녹색제품 구매·사용 예외 규정(안 제8조)

# 녹색제품 구매 집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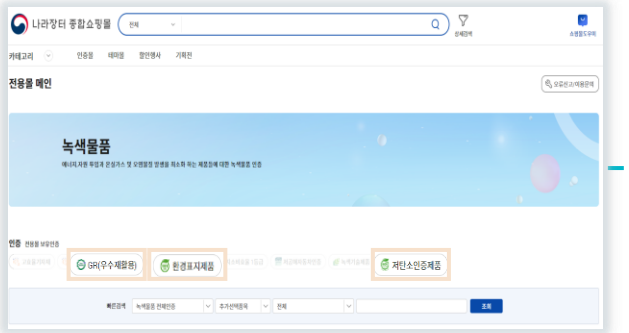


납품요구일 기준 실적 집계 월1회

## 녹색장터

구매확정 후 1~2주 이내 집계

자동 집계

수동 집계 | 수정요청
신청 후 1달 이내 집계

## 에코스퀘어 - 녹색구매 정보

ecosq.or.kr

## 온/오프라인몰

coupang
Hmall
11
Homeplus
Gmarket
emart
N+ 스토어

### 자동 집계 실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 납품요구일 기준 월 1회 실적 집계**

※ 에코스퀘어에 매월 중순경 전월 구매실적 반영

※ 조합공통품목, 총액계약 등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할 경우 일반 실적으로 집계되며, 수정요청(인정요청)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 변경 가능

**녹색장터: 2개 장터 운영 중이며, 구매 확정 후 1~2주 이내 실적 집계**

※ 녹색장터란? 녹색제품 구매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greenproduct.co.kr/ greenproduct.kr)

#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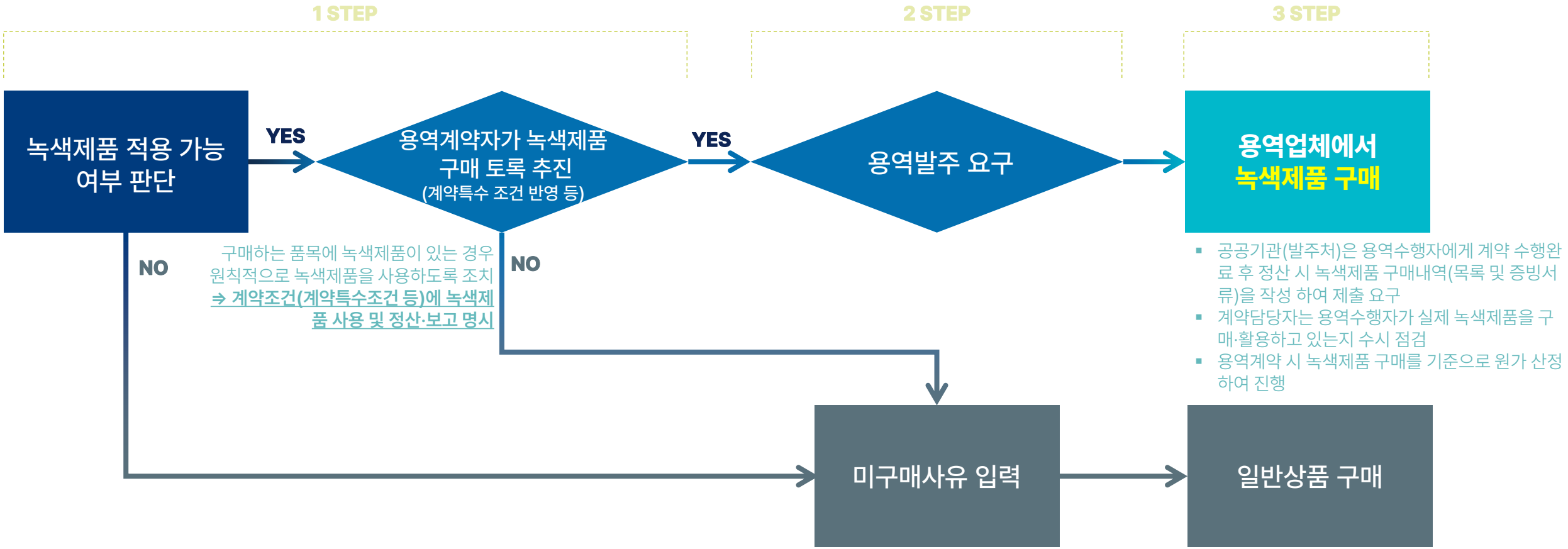

#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

-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보고 의무 명시 원칙 :** 계약조건에 녹색제품 사용,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원가산정 기준 :** 용역계약 시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진행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용역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녹색제품 사용 관련 확인 및 증빙서류>**

| 문서 종류 | 목적 및 중요성 | 주요 확인사항 |
|---|---|---|
| 녹색제품 인증서 사본 | 용역 수행 중 사용된 녹색제품의 총괄 현황 파악 | 인증 종류, 인증번호, 업체명, 정확한 제품명 및 모델명, 유효기간, 인증기관, 인증서 위변조 여부 (필요시 원본대조) |
| 개별 녹색제품 인증서 사본 | 사용된 각 제품이 적법한 녹색제품임을 증명 | 발급일자,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품명 및 모델명 (인증서와 일치 여부), 공급가액, 세액 |
| 녹색제품 구매 증빙자료 | 계약상대자가 해당 녹색제품을 실제로 구매했음을 입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납품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세금계산서 및 계약내용과 일치 여부) |
| 용역 완료 보고서 | 녹색제품 사용 의무 이행 결과 최종 확인 | 구매부서, 구매일자, 제품정보, 인증정보, 관련증빙첨부여부 |

## 계약서 명시 문구 예시

**[일반적 의무조항 예시]**

**제 00조 (녹색제품 사용의무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용역명칭]) 수행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구매 가능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 저탄소, GR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전에 사용할 녹색제품 목록 및 관련 인증 정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1. [구체적 품목 1, 예: 청소용 세제류] 2. [구체적 품목 2, 예: 인쇄용지 (양면복사 가능 용지)] 3.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품목]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구매·사용한 녹색제품의 목록(제품명, 인증번호, 규격, 수량, 구매처, 구매일자, 단가, 금액 등)과 각 제품별 유효한 **녹색제품 인증서 사본 및 구매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 녹색제품 사용실적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예: 매월 말일 /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녹색제품 사용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녹색제품 사용 현황 및 관련 서류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감액,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예시]**

본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청소 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세제류, 화장지, 비누 등은 유효한 환경표지 또는 GR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제품의 인증서 사본과 구매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녹색제품 사용 내역서를 월별 용역 대금 청구 시 함께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녹색제품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

# 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1 STEP

공사설계 요청 → 녹색 건설자재 우선적용 검토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제품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 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NO → 일반상품 구매

YES

2 STEP

공사설계도서 반영 → 내역 작성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 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3 STEP

발주 및 입찰 → 계약

4 STEP

공사 시공 → 구매실적 집계

**사급자재 구매**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을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관급자재 구매**

-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구매실적 수정요청 메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
- 수정요청은 ① 신규실적 추가요청, ② 녹색구매 인정요청 2가지로 분류

녹색건설자재 우선구매(각 사업부서) → 공사 시공

발주기관 (계약, 발주부서) → 감리(설계) 용역사 → 시공사 → 사급자재 구매 (의무구매)

# 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공사계약에서 녹색자재 사용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에 대한 관리가 중요**

## 설계 단계

- 공사설계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에 녹색제품 사용 근거 명확히 마련
-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건설자재 적용을 명시**하고, 설계자는 단열재, 페인트, 창호, 보도블록 등 주요 자재에 대해 녹색제품(환경표지, 저탄소, GR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
- 에코스퀘어의 친환경건설자재 정보 등 활용 가능

## 입찰 및 계약 단계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사급자재에 대한 녹색건설자재 우선 사용 의무를 명시**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BTL 방식 등의 공사 발주 시 녹색건설자재 사용 계획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낙찰된 시공사는 **녹색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서를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 시공 단계

- 자재 공급원 승인: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원)는 **시공사가 사용하는 사급자재**(하도급 공사 포함)에 대해 공급원 승인 시 **녹색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감독해야 함
- 사용 현황 점검: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시공사의 **녹색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 **관급자재**: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제공**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해야 할 의무도 고려

## 준공 및 정산 단계

-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정산 시 사용된 **녹색건설자재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이를 근거로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

※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 이는 녹색건설자재 사용 의무와 함께 준수

# 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공사계약에서 녹색자재 사용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에 대한 관리가 중요**

**<공사계약 시 단계별 녹색건설자재 관련 확인 및 증빙서류>**

| 단계 | 문서 종류 | 책임 주체(예시) | 주요 확인사항 | 증빙서류 |
|---|---|---|---|---|
| 설계 단계 | 설계도서(녹색자제 명시) | 설계자, 발주기관 | 주요 자재에 대한 녹색제품 적용 여부,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녹색건설자재가 명시된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
| | 과업지시서 (녹색자재 적용 명시) | 발주기관 | 설계용역 범위에 녹색자재 설계 포함 여부 | 시공사의 녹색건설자재 사용계획서 |
| 입찰/ 계약 |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 발주기관 | 녹색자재 사용 의무 명시 여부 | - |
| | 시공사의 녹색건설자재 사용계획서 | 시공사 | 구체적인 자재 목록, 예상 물량, 구매 계획, 인증 정보 등 | - |
| 시공 단계 | 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시공사 | 신청 자재가 녹색제품인지 여부, 인증서 유효성, 규격 적합성 |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자재 공급원 승인 서류 |
| | 녹색건설자재 인증서, 시험성적서 | 시공사 (공급업체로부터 수령) | 인증 유효기간, 제품 모델 일치 여부, 시험 결과가 시방 기준 충족 여부 | 개별 녹색건설자재 인증서 사본 및 시험성적서 (필요시) |
| | 녹색건설자재 구매 증빙 (세금계산서 등) | 시공사 | 구매처, 품명, 수량, 구매 시점 등 (공급원 승인 내용과 일치 여부) | 녹색건설자재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구매 증빙자료 |
| | 공사감독/감리일지 (자재 검측 기록) |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 반입 자재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시공 상태 점검 기록 | - |
| 준공/ 정산 | 최종 녹색건설자재 사용실적 보고서 | 시공사 | 실제 사용된 모든 녹색자재 목록, 총괄 수량, 금액, 관련 증빙자료(인증서, 구매 증빙 등) 일체 첨부 | 시공사의 최종 녹색건설자재 사용실적 보고서 |

# 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공사계약의 각 단계별 문서 및 계약서에 녹색자재 사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녹색자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

## 계약서 명시 문구 예시 ❶

**[설계용역 계약 또는 내부 설계지침 반영 문구 예시]**

**제 OO조 (녹색건설자재 설계 반영)** ① "설계자"는 본 공사([공사명칭])의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작성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구매지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체적 자재류 명시, 예: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벽돌, 타일, 단열재, 창호, 페인트, 방수재, 보도블록, 배수관 등]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또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등 녹색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성능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특정 녹색건설자재의 적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대체 가능한 일반 자재의 규격 및 성능을 명시한 검토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과 녹색제품의 범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내 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규칙 별지 제32호)
○ 제출시기 :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제출)
○ 벌 칙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대 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
○ 제출시기 : 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제1장 설 계 지 침 _ 337

338 _ 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공사계약의 각 단계별 문서 및 계약서에 녹색자재 사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녹색자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

## 계약서 명시 문구 예시 ❷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 문구 예시]**

**제 OO조 (녹색건설자재의 사용 및 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급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명시된 녹색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경우에도 **구매 가능한 녹색건설자재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사 중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녹색건설자재의 사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녹색건설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 최소 [예: 14일] 이전에 해당 제품의 **유효한 녹색제품 인증서 사본(인증번호, 유효기간, 적용 모델 명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구매 예정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자재만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설자재의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과정에서 인증서 내용과의 상이함, 품질 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반출하고 승인된 녹색건설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검사원 제출 시, 본 공사에 사용된 모든 녹색건설자재의 총괄 사용 내역(자재명, 규격, 인증 종류 및 번호, 사용량, 구매처, 구매금액 등)과 각 자재별 인증서 사본 및 최종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일체를 첨부한 "녹색건설자재 사용실적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며,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금액 감액, 대가지급 보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과 녹색제품의 범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장 설계지침 _ 337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내 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규칙 별지 제32호)
○ 제출시기 :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제출)
○ 벌 칙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대 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
○ 제출시기 : 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338 _ 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녹색제품 구매 집계

## 수동 집계 실적

### 대상 실적

① 나라장터 및 녹색장터 이외 판매처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② 용역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사급자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간접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③ 나라장터에서 구매 하였더라도 조합공통품목, 총액계약 등 연계 데이터 상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할 경우

### 집계방법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구매실적 수정요청 메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

수정요청은 ① 신규실적 추가요청, ② 녹색구매 인정요청, ③ 기존실적 예외요청 3가지로 분류

**<수정요청 종류>**

| 구분 | 설명 |
|---|---|
| 추가요청 | **자동 실적 집계가 되지 않는 판매처에서 구입**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집계를 신규실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 인정요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였으나, **총액계약 등으로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하여 **일반제품으로 집계된 실적**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
| 예외요청 | 구매 예외 사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1호~5호)에 해당되어 **일반제품으로 구매한 실적에 대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

**<수정요청 사유별 필요서류>**

| 구분 | 사유 | 필요서류 |
|---|---|---|
| 추가요청 | 나라장터 및 녹색장터 이외 구매건 |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인증서<br>※필요 시 견적서 등 **녹색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용역(서비스)업체에서 구매, 사급자재 등 |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인증서, 신청기관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서<br>※필요 시 견적서 등 **녹색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인정요청 | 갱신기간 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 • 증빙 불필요 |
| | 총액계약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 • **인증서, 녹색제품 규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조달청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br>※**계약명 및 납품요구번호 기재 필수** |
| | 조합공통품목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한 경우 | • **인증서, 조달청 분할납품요구서, 조달청 검사검수요청서** 또는 **조달청 배정통보서(배정변경통보서)** 등 |
| | 그 밖에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 녹색제품 구매 집계

## 수동 집계 실적

### 대상 실적

① 나라장터 및 녹색장터 이외 판매처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② 용역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사급자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간접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③ 나라장터에서 구매 하였더라도 조합공통품목, 총액계약 등 연계 데이터 상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할 경우

### 집계방법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구매실적 수정요청 메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

수정요청은 ① 신규실적 추가요청, ② 녹색구매 인정요청, ③ 기존실적 예외요청 3가지로 분류

**<수정요청 종류>**

| 구분 | 설명 |
|---|---|
| 추가요청 | **자동 실적 집계가 되지 않는 판매처에서 구입**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집계를 신규실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 인정요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였으나, **총액계약 등으로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하여 **일반제품으로 집계된 실적**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
| 예외요청 | 구매 예외 사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1호~5호)에 해당되어 **일반제품으로 구매한 실적에 대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

**<수정요청 사유별 필요서류>**

| 구분 | 사유 | 필요서류 |
|---|---|---|
| 예외요청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 제3자 단가계약 : 증빙 불필요<br>※구매제품 분류번호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조회되는 필요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br>• 총액계약 :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
|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 **제3자 단가계약** :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br>• **총액계약** :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및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br>• **조합공통품목** : 분할납품요구서, 조달청 또는 조합 명의 공문<br>※기초지자체 증빙 불요(관내구매) |
|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술 자문서, 시방서, 내부결재문 등) |
|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경우 | • **실적부족분 증빙** 가능한 **결재문 또는 시스템 캡쳐** 등 |
|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 하는 경우 | •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 03

1. 에코스퀘어 개요
2. 녹색구매 추가
3. 녹색구매 인정
4. 기존실적 예외

신규 통합시스템

## 접속 방법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원] → [녹색구매 정보]

기관 등록/변경 | (공통) 반려 건 재신청 기능 | 구매기관 소속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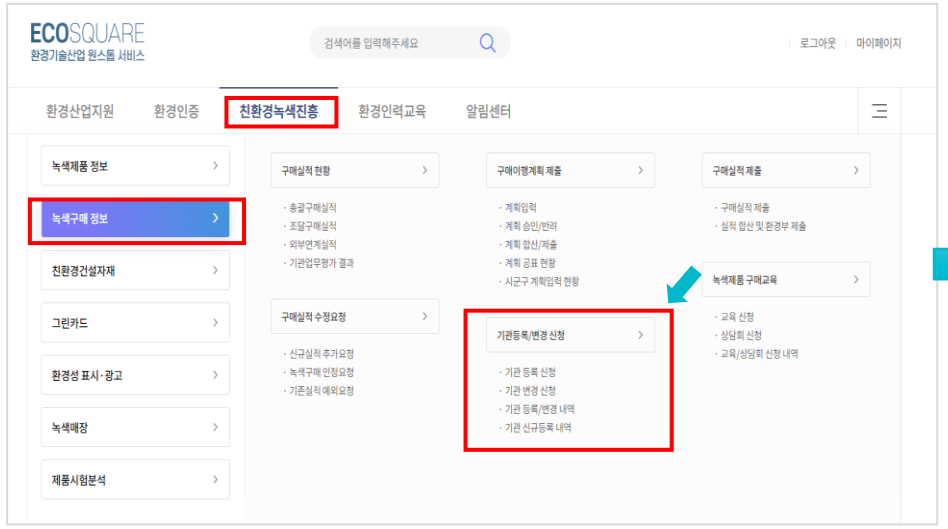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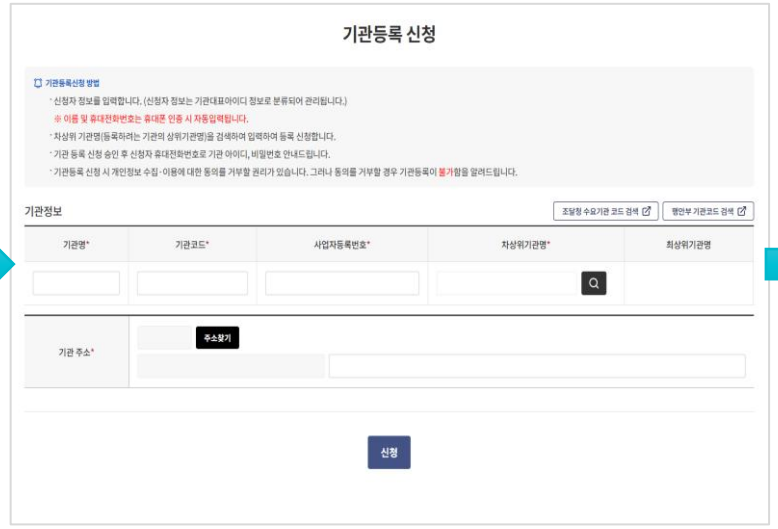

①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구)녹색구매정보시스템 기능 동일

[친환경녹색진흥원] → [녹색구매 정보] → [기관등록/변경 신청]

① [기관등록 신청] 클릭

② 기관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기관 코드는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또는 행정표준 코드

③ [신청] 클릭

④ 제출자 정보 입력 후 [저장]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아이디, 비밀번호 발송

※기관 공동인증서 인증 → 인증완료 후 신청/기술원 승인

기관 등록/변경 | (공통) 반려 건 재신청 기능 | 구매기관 소속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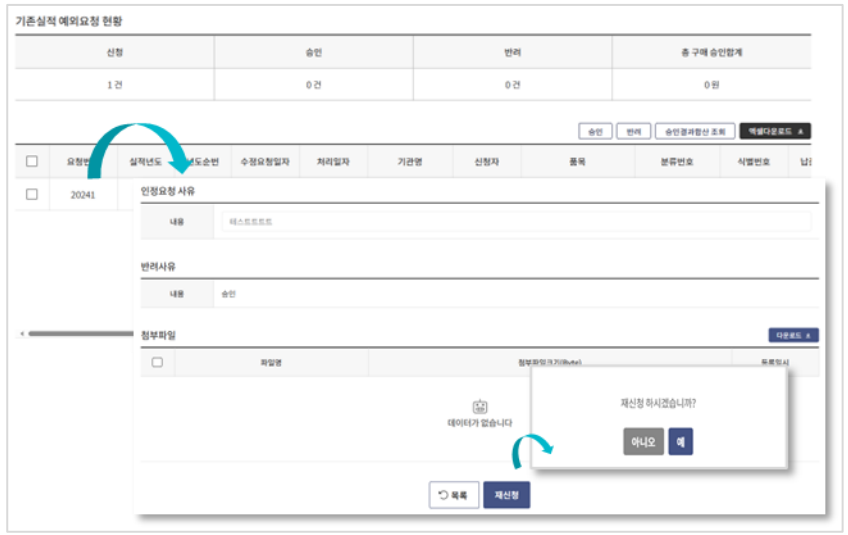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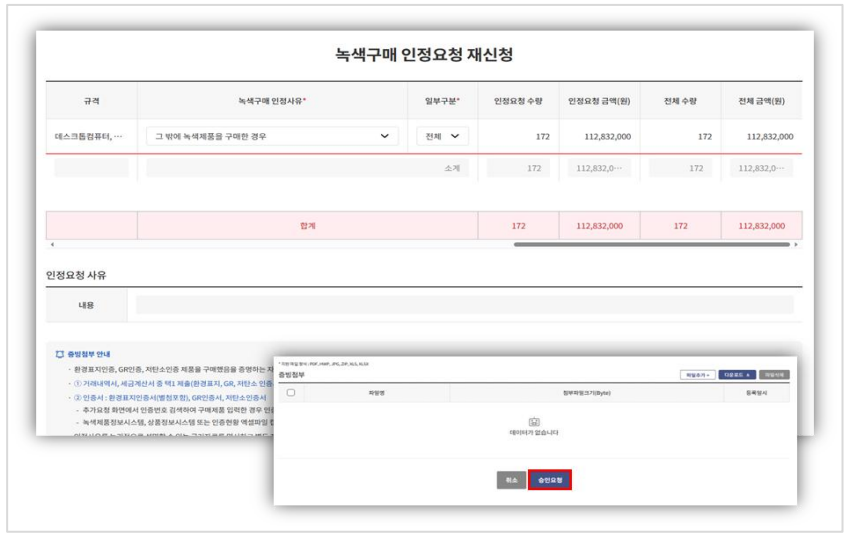


① 추가, 인정, 예외요청 반려건[요청번호]클릭
② 상세화면 하단에 [재신청] 클릭

[친환경녹색진흥원] → [녹색구매 정보] → [기관등록/변경신청
① 재신청 화면에서 인증구분, 금액, 첨부파일 등 수정
② [승인요청] 클릭

기관 등록/변경 | (공통) 반려 건 재신청 기능 | **구매기관 소속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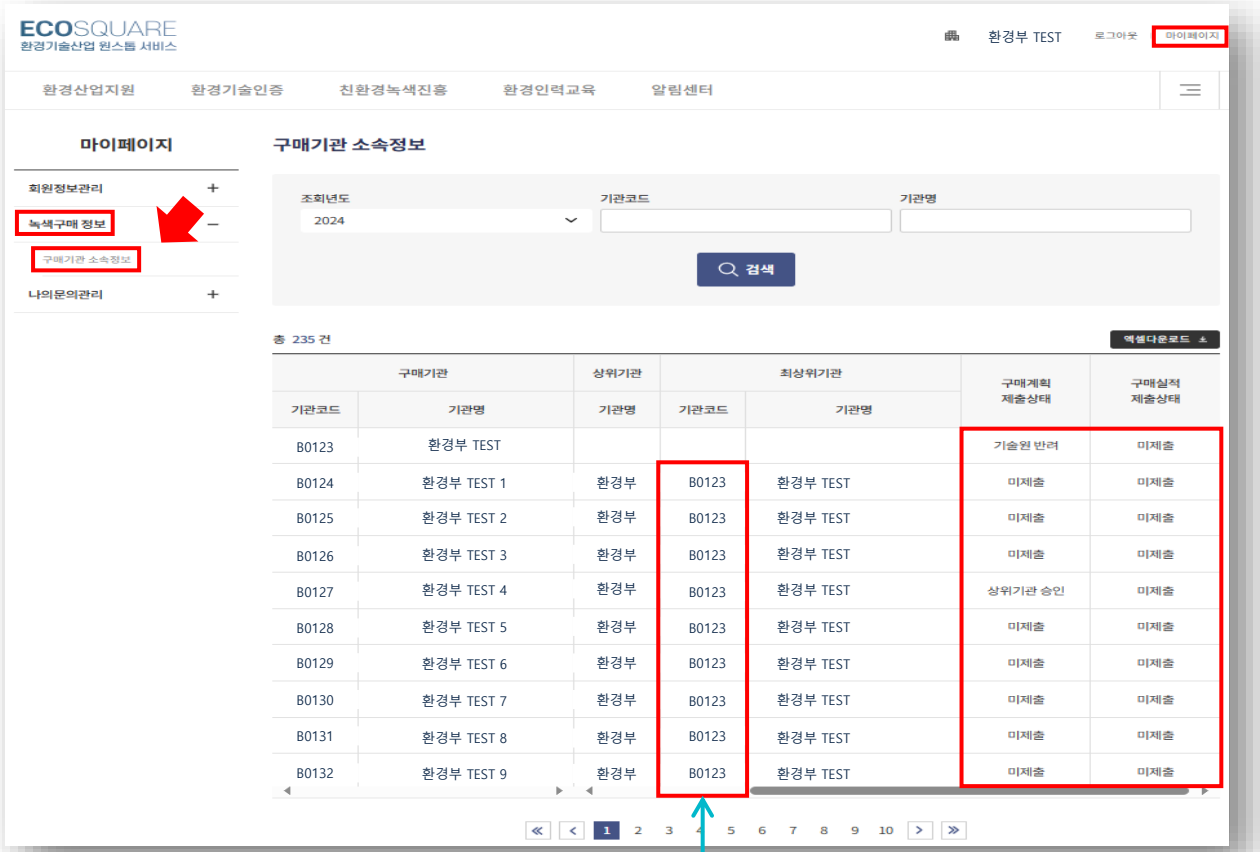


① 우측상단[마이페이지] 클릭
② [녹색구매 정보] 클릭
③ [구매기관 소속정보] 클릭
④ 소속기관 정보 및 계획/실적 제출 현황 확인 가능

**※ 계획/실적 제출 전 본청/하위기관 기관코드 현행화 必**

추가요청 개요 | 추가요청 확인사항 | 신규실적 추가요청 신청

## 대상 실적

| | |
|---|---|
| 신청 대상 실적 | 조달, 녹색장터, 외부연계 실적 외 **자체구매 실적**(승인 시 총구매금액 증가, 녹색구매금액 증가) |
| 실적 입력 대상 품목 | **녹색제품**(환경표지, 저탄소, GR 인증), 증빙에 기재된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의 일반제품(의무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총구매금액 집계 대상에 해당됨) |

## 증빙 서류

| | |
|---|---|
| 필요 증빙 |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지출결의서, 카드전표 첨부 가능: 지출 기관, 구매 제품, 금액이 확인될 경우)<br>• 견적서: 1번 증빙에 인증서 상의 제품명과 100% 동일한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br>• 인증서(환경표지, 저탄소, GR) 또는 인증현황 엑셀 캡쳐 화면: 에코스퀘어에서 추가요청 시 제품명 검색을 통해 구매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br>• 견적서, 납품내역서: 용역,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간접구매를 한 경우 |

## 증빙 서류 조건

| | |
|---|---|
| 필요조건 | • 필요 증빙에 신청 기관과 동일한 기관명 기재(간접구매-용역 업체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br>• 신청 시 증빙에 기재된 의무구매 품목을 전부 품목 추가하여 입력(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일반제품)<br>•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1건당 1건의 추가요청 신청**(품목 추가 가능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br>•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입력<br>• 녹색제품의 인증기간에 입력한 공급요구일자와 증빙 상의 세금계산서 **발생일자** 또는 **거래일자**가 해당 |

추가요청 개요 | **추가요청 확인사항** | 신규실적 추가요청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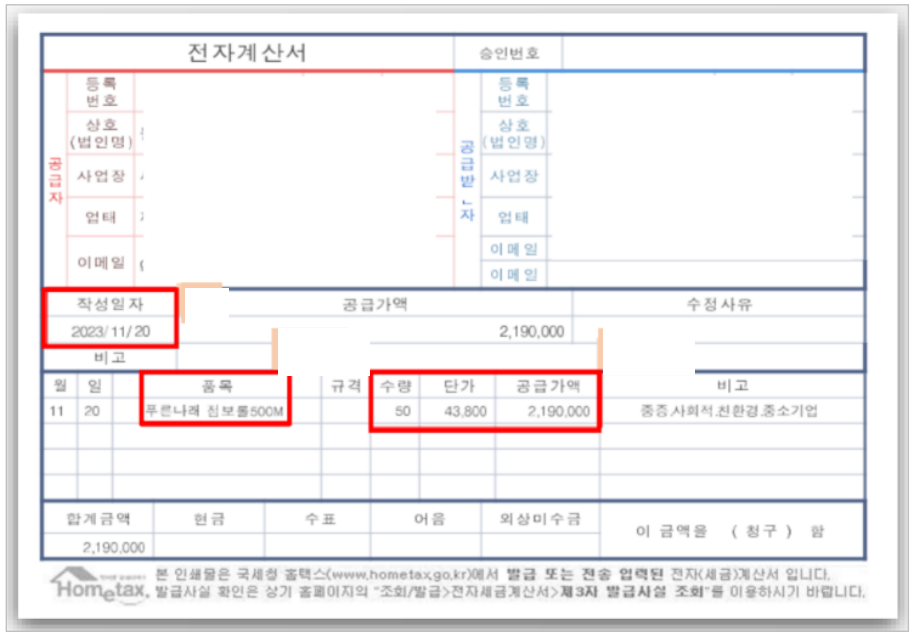

전자계산서

|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
| 상호(법인명) | | 상호(법인명) | |
| 사업장 | | 사업장 | |
| 업태 | | 업태 | |
| 이메일 | | 이메일 |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수정사유 |
|---|---|---|
| 2023/11/20 | 2,190,000 | |

비고

| 월 | 일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비고 |
|---|---|---|---|---|---|---|---|
| 11 | 20 | 푸른나래 점보롤500M | | 50 | 43,800 | 2,190,000 | 중증.사회적.친환경.중소기업 |

| 합계금액 | 현금 | 수표 | 어음 | 외상미수금 | 이 금액을 (청구) 함 |
|---|---|---|---|---|---|
| 2,190,000 | | | | | |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빙에 기재된 구매 품목 검색 후 선택(조회되는 인증 제품명과 증빙 상의 제품명 100% 일치 必)

② 계산서 상의 작성일자, 거래명세서 상의 거래일자 입력

※하나의 증빙에 여러 거래 건이 입력된 경우, 품목 추가 후 구분하여 입력

③ 수량에 품목 총 수량, 금액에 품목 총 구매금액 입력(부가세 포함)

※단가 입력 또는 계산 불필요

※녹색제품의 경우 총구매금액과 녹색구매금액 동일

[별첨] 2 / 2
제 23923 호

| 기본상표명 | 파생상표명 | 용도·제공서비스 | 통합인증 여부 |
|---|---|---|---|
| 푸른나래 점보롤(500m) |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1겹) | N |
| | 늘푸름 점보롤(500m)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1겹) | N |
| 푸른나래 두루마리(50m) |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2겹) | N |
| | 푸른나래 두루마리(50m/24롤)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2겹) | N |
| | 푸른나래 두루마리(70m)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2겹) | N |
| 푸른나래 점보롤(300m) |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2겹) | N |
| | 늘푸름 점보롤(300m)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2겹) | N |

- 인증서 상의 제품명(기본상표명 또는 파생상표명) =추가요청-품목명 검색시 조회되는 제품명 = 인증현황 엑셀 파일 제품명과 동일 제품명이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환경표지, 저탄소 인증 제품은 규격 별로 인증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규격을(500m) 포함한 제품명까지 구분

※GR 인증 인증현황 파일 규격명, 업체명으로 인증여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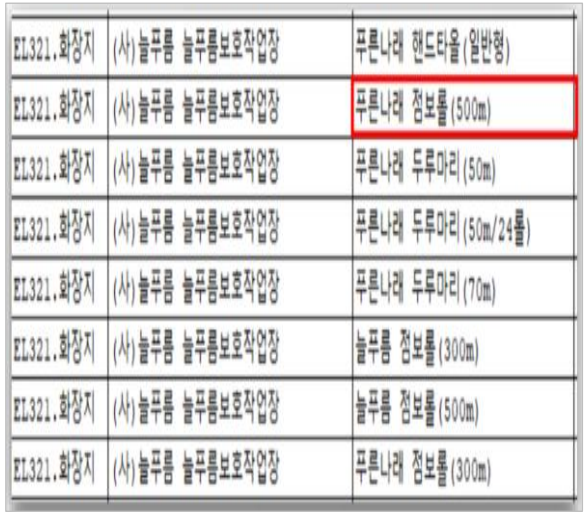

| | | |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푸른나래 핸드타올(일반형)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푸른나래 점보롤(500m)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푸른나래 두루마리(50m)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푸른나래 두루마리(50m/24롤)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푸른나래 두루마리(70m)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늘푸름 점보롤(300m)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늘푸름 점보롤(500m) |
| EL321.화장지 |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 푸른나래 점보롤(300m) |

- 푸른나래 점보롤(700m) 제품명이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경우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 미해당

추가요청 개요 | 추가요청 확인사항 | 신규실적 추가요청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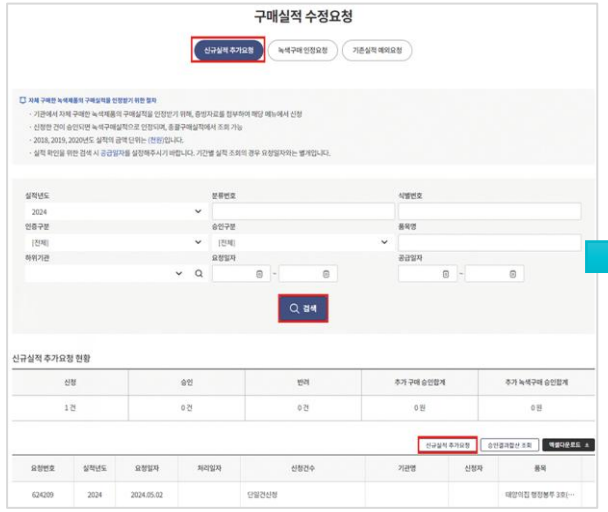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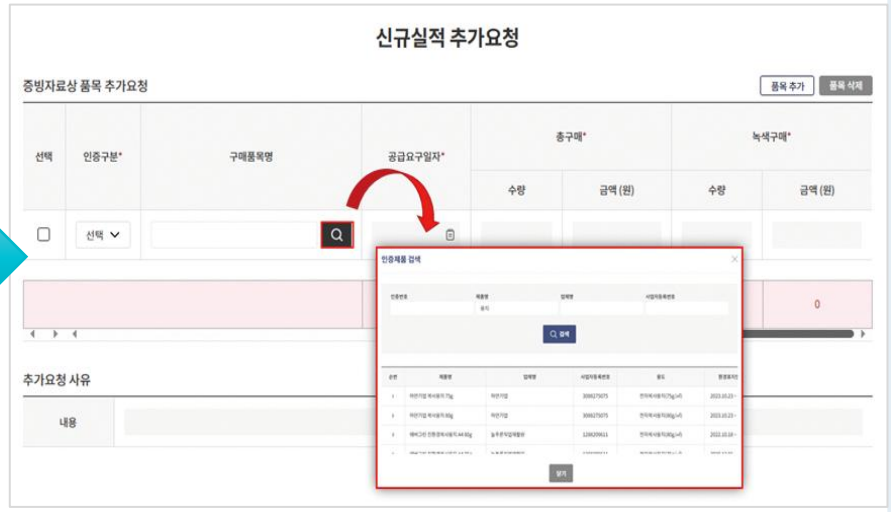


①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신규실적 추가요청] 클릭

② 신규실적 추가요청 현황 조회(실적년도 / 요청일자 / 분류번호 / 인증구분 / 승인구분 / 식별 번호 / 품목명에 따라 조회 가능)

③ '신규실적 추가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요청 화면으로 이동

※상세한 입력 방법, 필요 증빙 등의 사항은 에코스퀘어 [알림센터] → [공지사항]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제품 구매실적 수정요청 신청 방법' 게시글의 첨부 자료 참고

④ 증빙서류 상 품목 개수만큼 [품목추가] 클릭

※증빙서류 한 건당 한 건 신청

⑤ 소분류 항목 입력란 옆의 [돋보기] 클릭 후 신청대상 실적의 품목 분류 선택 (선택 시 자동으로 대분류, 중분류 입력됨)

⑥ 인증구분 선택

※복수인증 선택 시 각각 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必

⑦ 구매품목명 항목 입력란 옆의 [돋보기] 클릭

⑧ 신청 대상 확인하여 인증번호, 제품명 등 입력 후 [검색] 클릭

⑨ 검색 목록 중 신청 대상 제품명, 업체명 등 확인하여 클릭

추가요청 개요 | 추가요청 확인사항 | **신규실적 추가요청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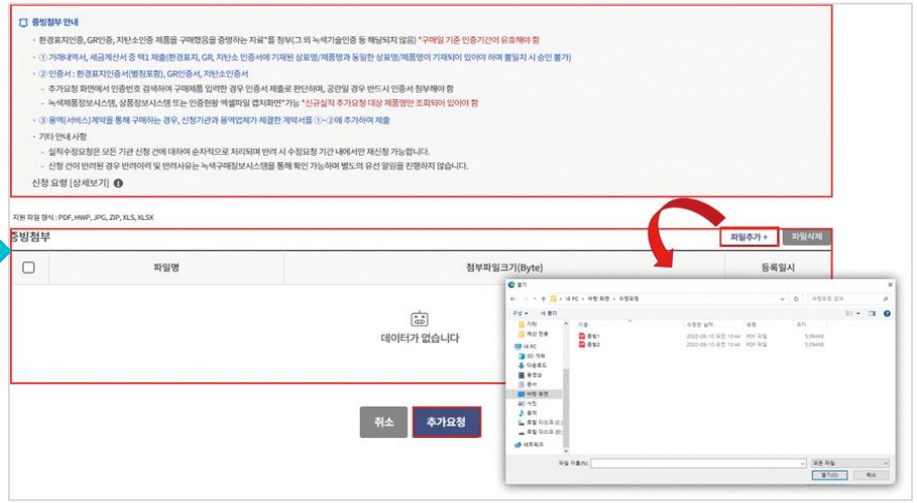


⑩ 증빙서류 상 공급일자 입력

⑪ 수량 및 구매금액 입력

※제품별 수량과 금액 입력

※입력대상: 증빙에 기재된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의 일반 제품, 녹색제품

⑫ 추가요청 사유 작성(선택사항)

⑬ [파일선택] 클릭하여 증빙서류 등록

※증빙첨부 안내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⑭ [추가요청] 클릭

## 신청대상 실적

조달청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일반 제품 구매실적으로 집계된 경우

## 계약 유형별 필요 증빙, 확인 사항

| 계약 유형 | 제3차 단가계약 | 총액계약 | 레미콘, 아스콘 조합공통품목 |
|---|---|---|---|
| 필요 증빙 | 시스템 상에서 제품명이 확인되어 증빙 불필요 | • 납품요구서 또는 조달청 계약서<br>•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내역서(계약명 또는 납품요구번호 기재 必)<br>• 인증서(환경표지, 저탄소, gr) 또는 인증현황 캡쳐 화면 | • 분할납품요구서<br>• 검사검수요청서 또는 배정통보서<br>• 인증서(환경표지, 저탄소, GR) 또는 인증현황 캡쳐 화면 |
| 실적 인정 요청 조건 | 인정요청 대상 실적의 시스템 상 납품요구일이 인증기간에 해당될 경우 | • 신청 건의 납품요구번호 또는 계약명과 증빙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br>•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인증서 상의 제품명이 동일<br>• 납품요구일이 인증기간에 해당<br>• 증빙 상의 녹색제품 구매 금액과 인정요청 금액 일치(일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일 경우 해당 금액 신청) | • 신청 계약 건의 납품요구번호와 증빙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br>• 검사검수요청서 또는 배정토보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인증서 상의 제푸명이 동일<br>• 납품요구일이 인증기간에 해당<br>• 증빙상의 녹색제품 구매 금액과 인정요청 금액 일치(일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일 경우 해당 금액 신청) |

인정요청 개요 | **제3자 단가계약** | 총액 계약 | 녹색구매 인정요청 신청

| 인 | 납품요구번호 | 변경차수 | 공급일자 | 분류번호 | 식별번호 | 품명 | 계약구분 | 제품규격 |
|---|---|---|---|---|---|---|---|---|
| 일 | | 0 | 2023.09.11 | 30111505 | 23734426 | 레미콘 | 제3자단가 | 레미콘, 조합공통품목, 25-21-80, 25-21-80 |
| 일 | | 1 | 2023.09.11 | 30111505 | 23734426 | 레미콘 | 제3자단가 | 레미콘, 조합공통품목, 25-21-80, 25-21-80 |
| 일 | | 0 | 2023.09.11 | 46171610 | 23664489 | 보안용카메라 | 제3자단가 | 보안용카메라, 포딕스시스템, FDC-IS1251-ZR, 13.37··· |
| 일 | | 0 | 2023.09.11 | 55121903 | 24401266 | 전광판 | 제3자단가 | 기상전광판, 창조라이팅, CJWW-1S-G-H2, 2000×40··· |
| 일 | | 0 | 2023.09.11 | 43211902 | 24493061 | LCD패널또는모니터 | 제3자단가 | 액정모니터, 엘지전자, (CN)22MP410, 54.5cm |
| 일 | | 0 | 2023.09.11 | 46171610 | 23825516 | 보안용카메라 | 제3자단가 | 보안용카메라, 포딕스시스템, FDC-IB6080R, 9.07mm··· |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했으나 일반 구매 실적으로 집계되는 경우>인정요청 대상에 해당

※조달청에 일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납품요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제품이 인증 갱신 기간인 경우

① 제품규격에 기재된 업체명, 제품명 확인

② 녹색제품 정보-상세검색-제품명 검색

③ 공급일자(납품요구 계약 체결일) 확인 후 제품 인증 기간과 비교

※공급일자가 인증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요청 대상(지출일, 실 납품일과 무관)

④ 공급일자(2023.09.11)가 인증기간에 해당되므로 인증구분 선택>사유 선택 후 인정요청 신청

※시스템상에서 공급일, 제품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증빙 불필요

인정요청 개요 | 제3자 단가계약 | **총액 계약** | 녹색구매 인정요청 신청

※ 인정요청 中 반려된 건에 대한 재신청은 인정요청 현황 화면에서 요청번호 클릭 후 상세 화면에서 재신청 가능합니다.

| | 공급일자 | 분류번호 | 식별번호 | 품명 | 계약구분 | 제품규격 |
|---|---|---|---|---|---|---|
| ☐ | 2023.09.25 | 26111707 | 22437169 | 연산축전지 | 총액계약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
| ☐ | 2023.05.26 | 26111707 | 22437169 | 연산축전지 | 총액계약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
| ☑ | 2023.05.08 | 26111707 | 22437169 | 연산축전지 | 총액계약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
| ☐ | 2023.03.03 | 26111707 | 10040175 | 연산축전지 | 총액계약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MF 100-12C, 무보수밀폐형, 12V··· |
| ☐ | 2023.02.22 | 26111707 | 10040168 | 연산축전지 | 총액계약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무보수밀폐형(ES), 배터리12V-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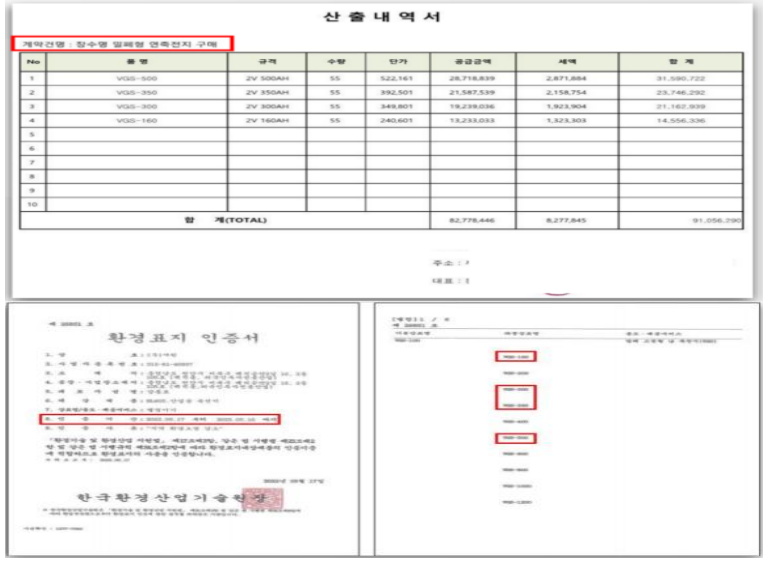


- 총액계약의 경우 타 품목 구매금액, 인건비 등의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집계됨. 정확한 구매 품목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반 제품 구매 실적으로 집계
- 1. 조달청 계약서/2.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3. 인증서(환경표지, 저탄소, GR) 또는 인증현황 캡처 파일 첨부 후 신청

  ※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상에 납품요구번호 또는 계약건명 기재 必
- 구매 금액에 녹색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설치비, 노무비 등의 금액이 포함된 경우, 전체 실적 예외요청(신청 시 사후 작성) 후 녹색제품 구매 금액 해당분 추가요청 신청

- 집계된 조달실적의 공급일자가 인증서 또는 인증현황의 인증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요청 가능

  ※인증갱신 제품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갱신 이전 인증현황 파일과 갱신 이후 인증현황 파일 비교

| A | B | C | H | K | L | M |
|---|---|---|---|---|---|---|
| 대상제품군 | 업체명 | 제품명 | 용도 | 최초인증일 | 인증시작일 | 인증종료일 |
| EL603.산업용 축전지 | | VGS-160 | 밀폐 고정형 납 축전지(VGS) | 2000/09/22 | 2021/08/26 | 2024/08/25 |
| EL603.산업용 축전지 | | VGS-300 | 밀폐 고정형 납 축전지(VGS) | 2000/09/22 | 2021/08/26 | 2024/08/25 |
| EL603.산업용 축전지 | | VGS-350 | 밀폐 고정형 납 축전지(VGS) | 2000/09/22 | 2021/08/26 | 2024/08/25 |
| EL603.산업용 축전지 | | VGS-500 | 밀폐 고정형 납 축전지(VGS) | 2000/09/22 | 2021/08/26 | 2024/08/25 |

인정요청 개요 | 제3자 단가계약 | 총액 계약 | **녹색구매 인정요청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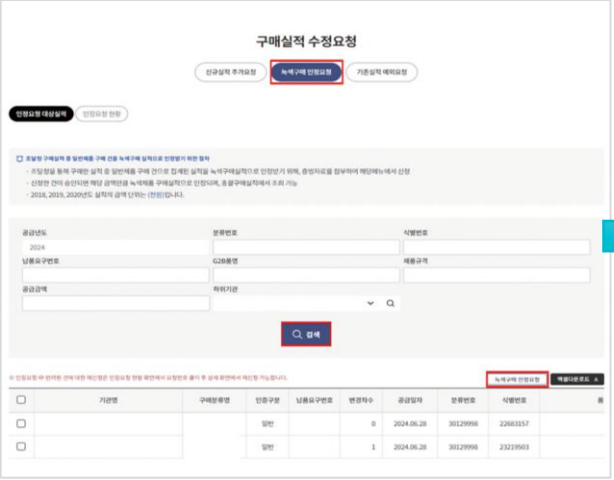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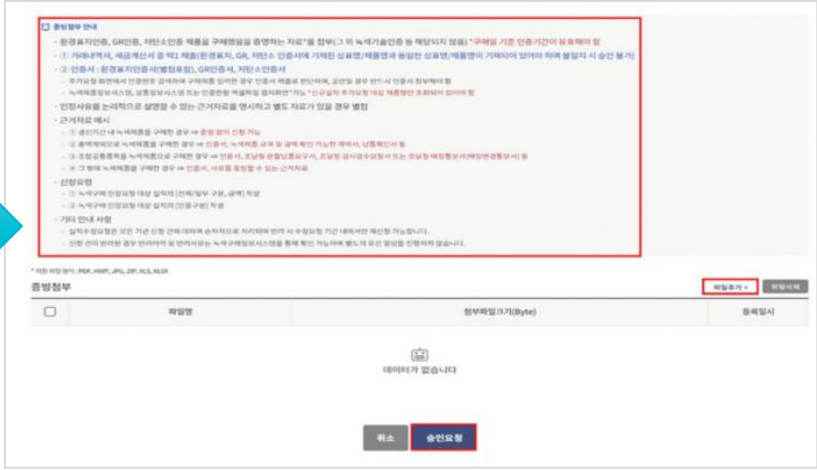


①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녹색구매 인정요청] 클릭

② 녹색구매인정요청대상 실적 조회(분류번호/식별번호/납품요구번호 등에 따라 조회 가능)

③ 신청하고자 하는 실적 선택(최대 15개까지 선택 가능)

④ [녹색구매 인정요청] 클릭

⑤ 녹색구매 인정요청 대상 실적의 인증구분 선택

※복수인증 선택 시 각각 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必

⑥ 녹색구매 인정요청 사유 선택(추가 작성 필요시 하단에 작성)

⑦ 선택된 실적의 전체/일부 구분 및 금액 입력

※전체 계약 금액 중 일부 금액에 한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일부 선택 후 해당 금액 입력

⑧ [파일추가] 클릭하여 작성한 증빙서류 등록

※증빙첨부 안내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⑨ [승인요청] 클릭

## 신청대상 실적

의무구매 예외사유로 인해 일반 제품을 구매한 경우

## 계약 유형별, 예외 사유별 필요 증빙 및 확인 사항

| 계약 유형 | 제3차 단가계약 | 총액계약 | 레미콘, 아스콘 조합공통품목 |
|---|---|---|---|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 **필요 증빙:** 없음<br>• **예외 조건:** 구매제품의 분류번호를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했을 때 조회되는 동일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을 경우<br>* 수요기관규격, 부품 품목은 주문제작 구매에 해당하여 전체 예외 사유로 인정(증빙 불필요) | • **필요 증빙:** 1계약서/ 2.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br>• **예외 조건:** 구매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했을 대 조회되는 동일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을 경우 | • **필요 증빙:** 분할납품요구서<br>*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사시기가 관내로 한정되어 있어 증빙 불필요(광역자치단체(증빙필요))<br>• **예외 조건:** 나라장터 레미콘, 아스콘 전용몰에서 공사현장에서 공급가능한, 구매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을 경우 |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 **필요 증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내부결재문, 협조공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 상에서 구매 품목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 • **필요 증빙:** 1. 계약서/ 2.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3.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내부 결재문, 협조 공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 상에서 구매 품목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 • **필요 증빙:** 1. 분할납부요구서/ 2. 조달청 또는 조합 발송 공문(해당 공사지에 녹색제품 배정을 요청했으나, 공급이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 가능)<br>• **예외 조건:** 공사지에 녹색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 **필요 증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기술자문서, 시방서, 내부결재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에서 녹색제품의 품질 검토 사항이 확인되고, 구매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녹색 제품이 없을 경우 | • **필요 증빙:** 1. 계약서/ 2.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3.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기술자문서, 시방서, 내부결재문 등)<br>• **예외조건:** 증빙에서 녹색제품의 품질 검토 사항이 확인되고, 구매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 **필요증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기술자문서, 시방서, 내부결재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에서 녹색제품의 품질 검토 사항이 확인되고, 나라장터 레미콘, 아스콘 전용몰에서 구매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 신청대상 실적

의무구매 예외사유로 인해 일반 제품을 구매한 경우

## 계약 유형별, 예외 사유별 필요 증빙 및 확인 사항

| 계약 유형 | 제3차 단가계약 | 총액계약 | 레미콘, 아스콘 조합공통품목 |
|---|---|---|---|
|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경우 | • **필요 증빙:** 우선구매 실적 부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 또는 시스템 캡쳐화면<br>• **예외 조건:** 1. 실적이 부족한 우선 구매제도 인증을 취득한 녹색 제품이 나라장터에서 조회도지 않음/ 2. 납품요구일자가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한 월에 해당 됨 | • **필요 증빙:** 1. 계약서/ 2.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3. 우선구매 실적 부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 또는 시스템 캡쳐화면<br>• **예외 조건:** 1. 실적이 부족한 우선구매제도 인증을 취득한 녹색제품이 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음/ 2. 납품요구일자가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한 월에 해당 됨 | 해당 없음 |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 **필요 증빙:**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저인 증빙(내부결재문, 협조공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 상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사항과 녹색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 될 경우 | • **필요 증빙:** 1. 계약서/ 2.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3.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내부결재문, 협조공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 상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사항과 녹색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 • **필요증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내부결재문, 협조공문 등)<br>• **예외 조건:** 증빙 상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사항과 녹색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

예외요청 개요 |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품질 저하 등의 이유 | 타 우선구매 제도 이행 | 긴급 수요 | 기타

① [예외요청 대상실적 검색] → 대상 실적의 분류번호 복사
② [상품정보검색] 클릭 → 목록정보시스템 접속
③ 검색 → 품목검색 → 분류번호 입력
④ 연계 인증명(환경표지, 저탄소, GR)선택 후 검색

⑤ 동일 규격 제품 부재 시 예외 요청 신청
※제3자 단가계약: 증빙 불필요
※총액계약: 1. 조달청 계약서/2. 구매 품목명, 계약명 또는 계약 번호가 기재된 납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첨부

⑥ 동일 규격 여부는 <u>붙임2. 의무구매 예외 규격 기준</u> 엑셀 파일 참고
※수요기관규격, 부품 품목의 경우 주문 제작 규격에 해당하여 증빙 첨부하지 않고 예외요청 신청

예외요청 개요 |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품질 저하 등의 이유 | 타 우선구매 제도 이행 | 긴급 수요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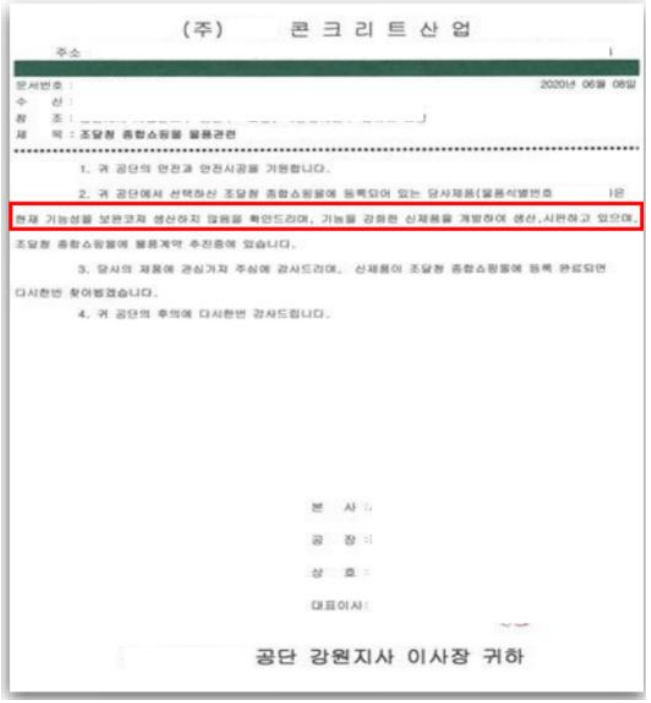

(주) 콘 크 리 트 산 업

주소 [redacted]

문서번호 :
2020년 06월 08일
수 신 :
참 조 :
제 목 :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관련

1. 귀 공단의 안전과 안정시공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단에서 선택하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당사제품(물품식별번호 )은 현재 기능성을 보완코자 생산하지 않음을 확인드리며,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시판하고 있으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물품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3. 당사의 제품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신제품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 완료되면 다시한번 찾아뵙겠습니다.

4. 귀 공단의 후의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사 :
공 장 :
상 호 :
대표이사 :

공단 강원지사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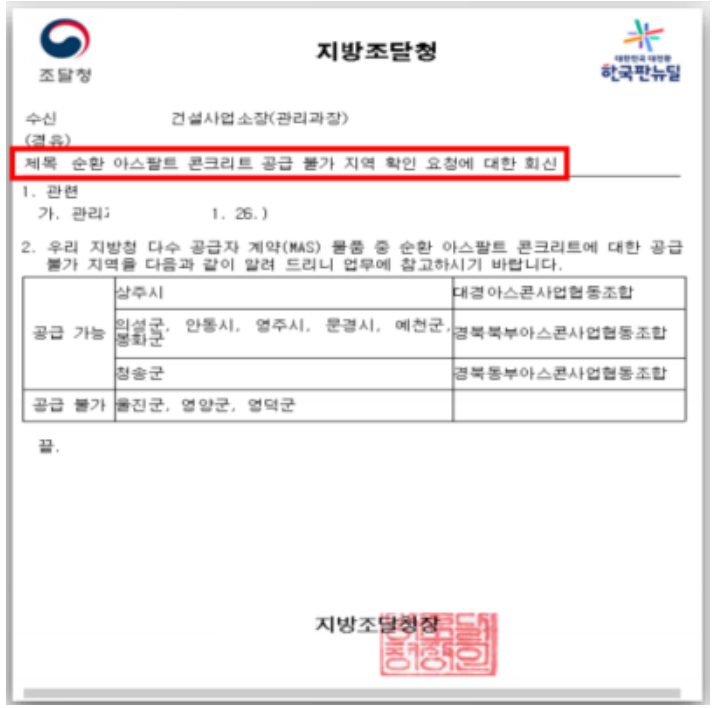

조달청

지방조달청

한국판뉴딜

수신 건설사업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 불가 지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
가. 관리: 1. 26.)

2. 우리 지방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물품 중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한 공급 불가 지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공급 가능 | 상주시 | 대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 |
| | 의성군,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경북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 | 청송군 | 경북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 공급 불가 |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 |

끝.

지방조달청장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하여 예외요청(기관명, 구매 품목이 기재된 조달청 공문, 인증 제품 생산업체 발송 공문 등
- 녹색제품 납품, 배경을 요청했으나 반려된 경우에도 관련 내용 증빙 첨부 시 예외 사유로 인정

예외요청 개요 |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품질 저하 등의 이유** | 타 우선구매 제도 이행 | 긴급 수요 | 기타

-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한 -

##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항 적용 검토보고

<2023. 1. 2.(월), >

공단시설 내 수목관리에 사용되는 비료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항」 적용을 검토한 보고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호와 관련하여 2019. 02. 01.부터 녹색제품 구매율 증가를 위한 구매 계약방식 변경으로 비료의 경우 녹색제품 등록군에 속함

○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녹색제품의 토양개량제는 가림환경개발의 「바이오그로-쏘일2」 제품이 유일함

○ 「바이오그로-쏘일2」의 원재료는 계분 30%, 동물부산물 30%, 톱밥·수피등 40%로 대부분 동물의 부산물로 이루어져 악취가 심함

○ 우리공단이 관리하는 녹지시설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녹색제품 비료 사용이 부적합함

□ **추진개요**

○ 구입방법 : 조달청 내 등록된 식물성부산물(톱밥·수피·바크 등) 재료 위주로 제조된 무취의 비료 구입

○ 구입시기 : 연중

○ 구입수량 및 금액 : 10,100포(80,800천원)

| 구 분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10,100포** | **80,800천원** | |
| 공원 | 3,750포 | 30,000천원 | |
| 가로녹지 | 3,750포 | 30,000천원 | |
| 체육공원 | 2,000포 | 16,000천원 | |
| 공원 | 600포 | 4,800천원 | |

- 녹색제품 구매 불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 시방서, 기술 자문서 등의 증빙 첨부 必

※PDF, JPG 등 편집이 불가능한 형식의 파일

## 설계자문 의견서

○ 안건명 : 시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검토 보고서 자문

상기 안건에 대한 자문 의견을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건설(Airside 및 Landside)공사에 사용될 아스콘은 기층 25mm BB-3, 기층 25mmFAA, 표층 20mmS, 표층 20mmFAA(상부), 표층 밀입도 WC-2, 표층 밀입도 WC-1 SBS, 표층 밀입도 WC-1, 중간층 20mm MC-1, 표층 10mm 개질 SMA(상부), 표층 10mm 개질 SMA(하부), 표층 13mm 개질 SMA 등 11종으로 판단됨.

2. 제2장 4쪽 3.10 SMA용 골재생산 설비에서 입도에 맞는 골재에서 입도 및 입형에 맞는 골재로 수정 필요. SMA골재는 입도 뿐만 아니라 입형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입형에 맞는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골재 생산설비가 필요함.

3. 제2장 6쪽 4.4 아스콘 플랜트에서 표현을 정확히 하기위해 '아스콘 플랜트에서는 시간당 생산능력 600(ton/hr) 이상과' 에서 '아스콘 플랜트에서는 시간당 평균 총생산능력 600(ton/hr) 이상 가능한 플랜트 수와' 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4. 제2장 8쪽 5)혼빈 및 계량설비 중 혼빈을 4~5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설치되는 아스콘 플랜트는 4구획이며, 과거 플랜트도 4구획에서 5구획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음. 품질관리면에서 5구획의 플랜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으며, 과 가까운 건단지역의 아스콘 플랜트를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5 구획임.

제 1 장 일반시방서

[illegible]

- 증빙에 계약명 또는 납품요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조달청 계약 서류 추가 첨부

예외요청 개요 |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품질 저하 등의 이유 | 타 우선구매 제도 이행 | 긴급 수요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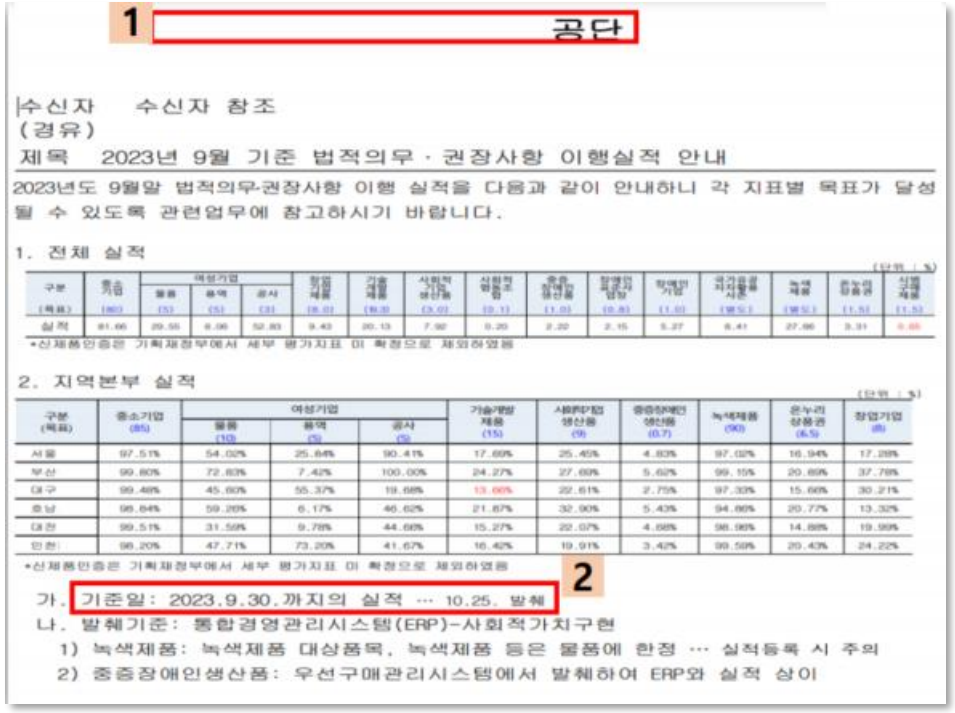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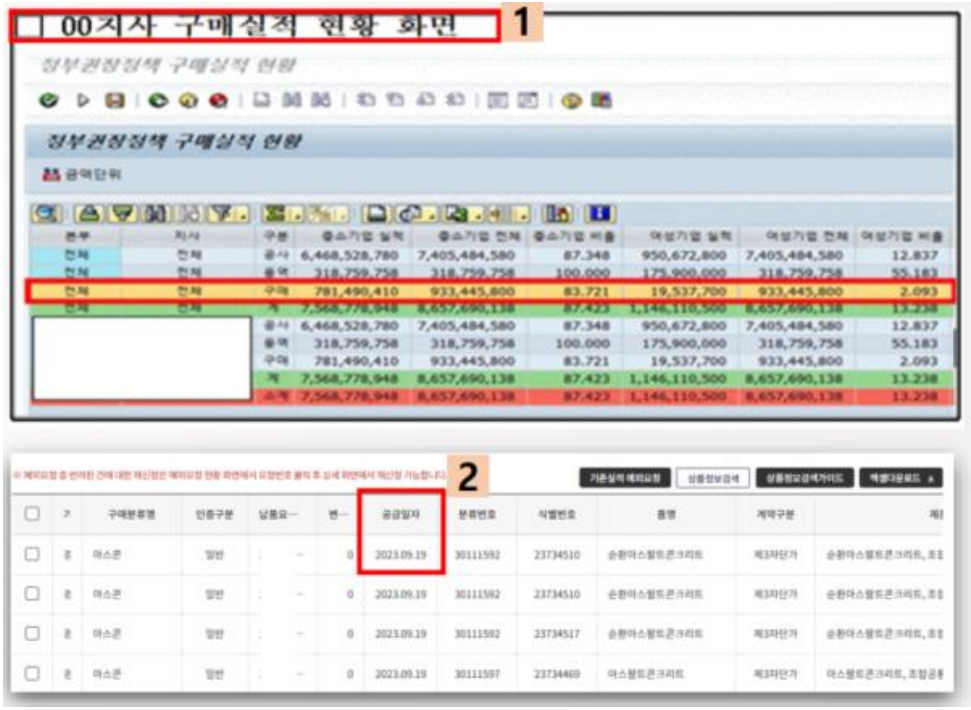


① 구매 당시의 실적 부족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 도는 기관명 확인 가능한 시스템 캡쳐 화면 등의 증빙 첨부

② 시스템상의 공급일자 해당 월과 증빙 조회 월 일치 必

예외요청 개요 |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품질 저하 등의 이유 | 타 우선구매 제도 이행 | **긴급 수요**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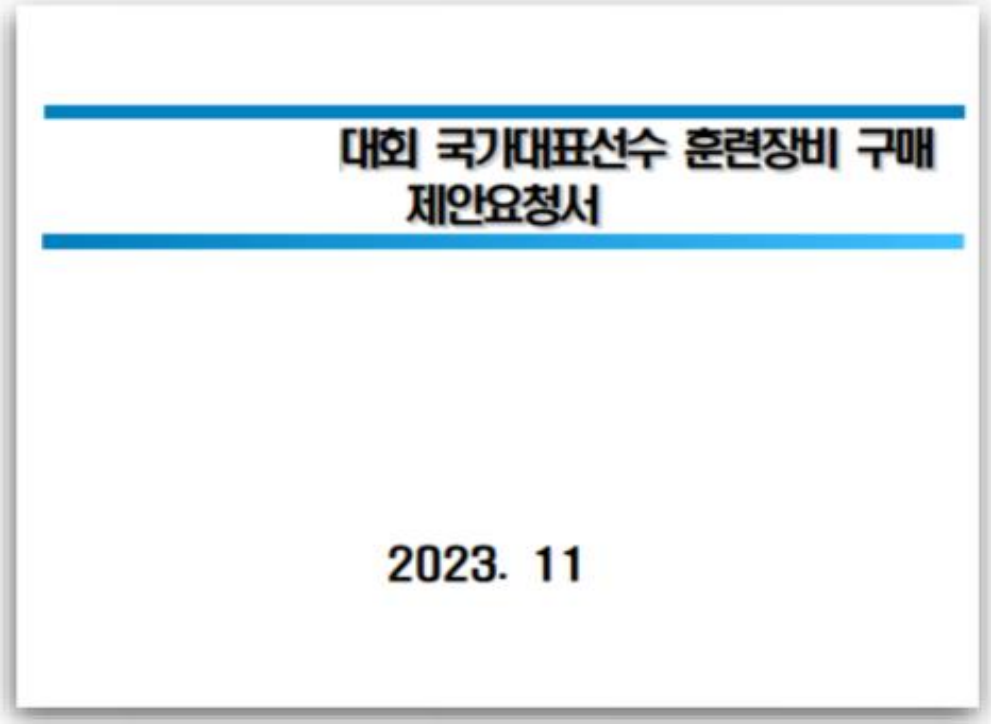

대회 국가대표선수 훈련장비 구매
제안요청서

202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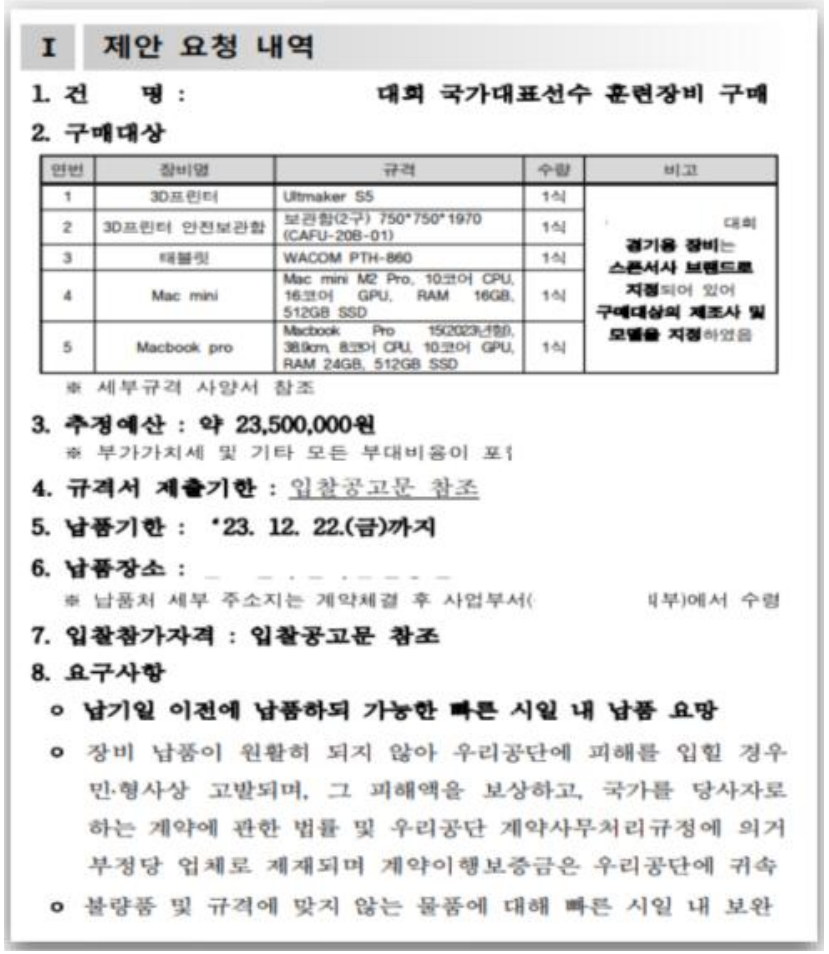

Ⅰ 제안 요청 내역

1. 건 명 : 대회 국가대표선수 훈련장비 구매

2. 구매대상

| 연번 | 장비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1 | 3D프린터 | Ultimaker S5 | 1식 | 대회 경기용 장비는 스폰서사 브랜드로 지정되어 있어 구매대상의 제조사 및 모델을 지정하였음 |
| 2 | 3D프린터 안전보관함 | 보관함(2구) 750*750*1970 (CAFU-20B-01) | 1식 | |
| 3 | 태블릿 | WACOM PTH-860 | 1식 | |
| 4 | Mac mini | Mac mini M2 Pro, 10코어 CPU, 16코어 GPU, RAM 16GB, 512GB SSD | 1식 | |
| 5 | Macbook pro | Macbook Pro 15(2023년형), 38.9cm, 8코어 CPU, 10코어 GPU, RAM 24GB, 512GB SSD | 1식 | |

※ 세부규격 사양서 참조

3. 추정예산 : 약 23,5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

4. 규격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5. 납품기한 : '23. 12. 22.(금)까지

6. 납품장소 :
※ 납품처 세부 주소지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 내부)에서 수령

7.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8. 요구사항
- 납기일 이전에 납품하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납품 요망
- 장비 납품이 원활히 되지 않아 우리공단에 피해를 입힐 경우 민·형사상 고발되며, 그 피해액을 보상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
- 불량품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보완

-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사항, 기관명, 구매 품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 협조 공문 등의 증빙 첨부하여 예외요청 신청

예외요청 개요 |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품질 저하 등의 이유 | 타 우선구매 제도 이행 | 긴급 수요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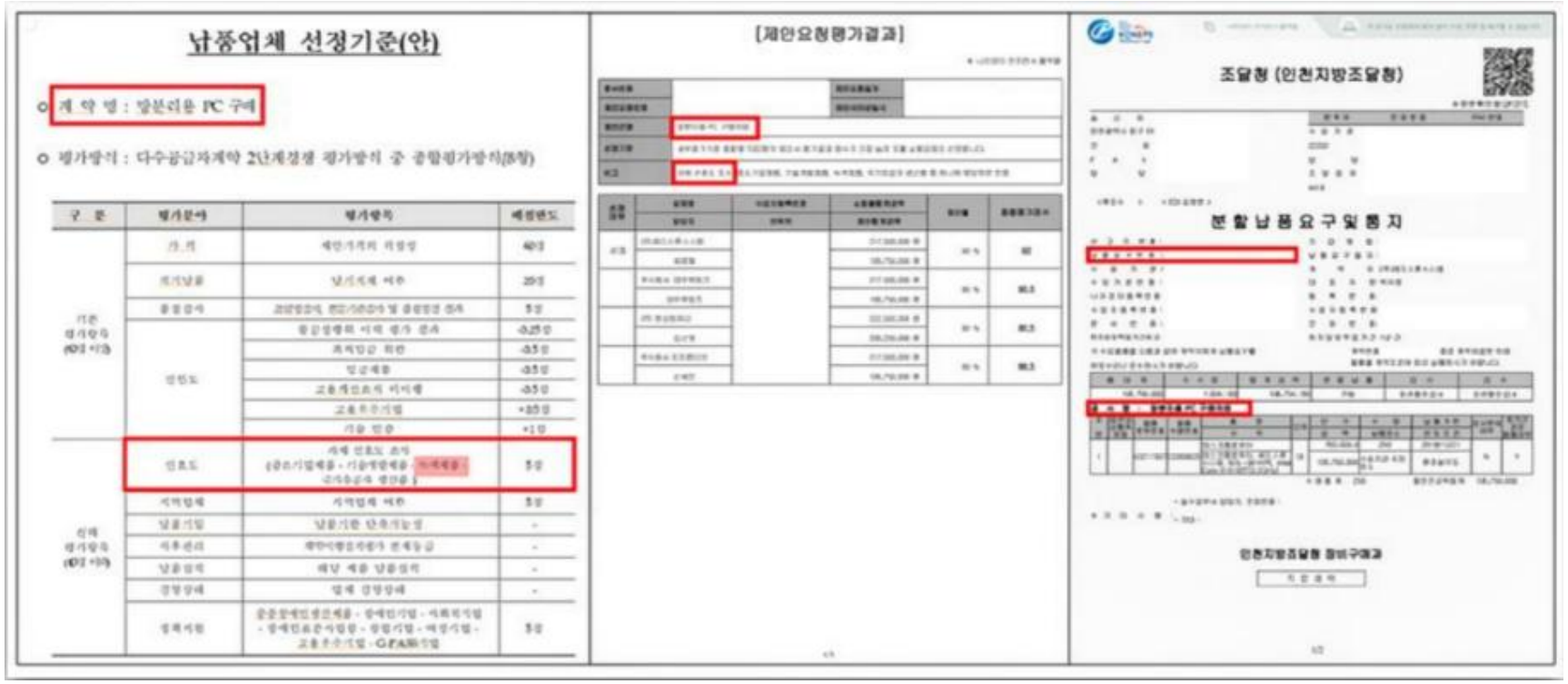


- 2단계 경쟁 → 종합평가방식 → 녹색제품에 선호도 가점을 일부 부여 했음에도 녹색제품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의무구매 예외 사유 인정

※23.07 2단계 경쟁 종합평가 → 선호도 가점 최대 5점 → 7.5점으로 개정

- 1. 조달청 계약서/ 2. 동일한 계약번호 또는 계약명이 기재된 평가표 첨부하여 예외요청 신청
-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반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하여 예외 요청(기관명, 구매 품목이 기재된 내부 결재문, 조달청 공문 등)

## 기존실적 예외요청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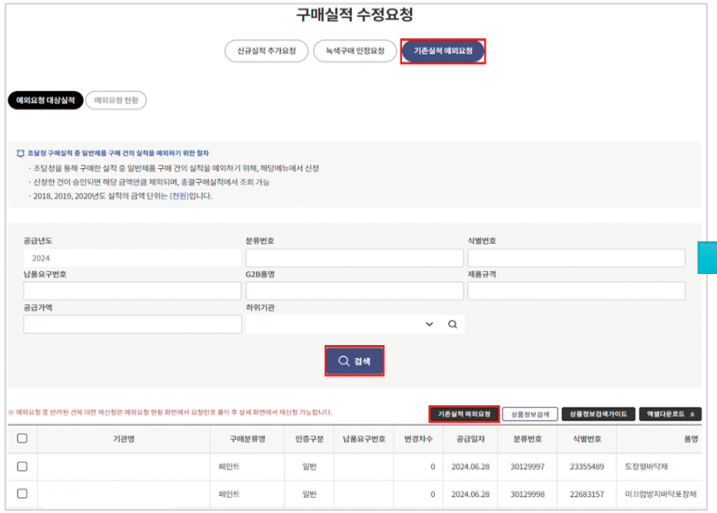


①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기존실적 추가요청] 클릭

② 기존실적 예외요청 대상 실적 조회(분류번호 / 식별 번호 / 납품요구번호 등에 따라 조회 가능)

③ 신청하고자 하는 실적 선택(최대 15개까지 선택 가능)

④ [기존실적 예외요청] 클릭

## 기존실적 예외요청 수정 및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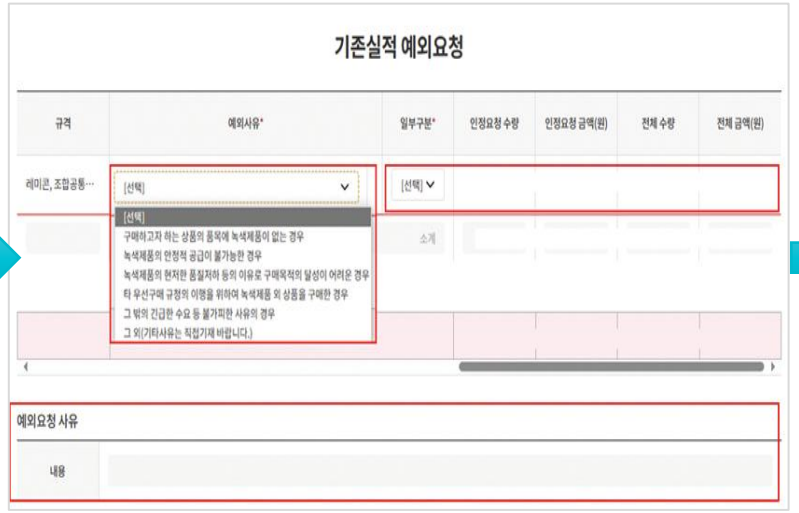


⑤ 기존실적 예외요청 사유 선택

⑥ 선택된 실적의 전체/일부 구분 및 금액 입력

※추가 작성 필요시 하단에 사유를 별도로 작성

## 예외요청 자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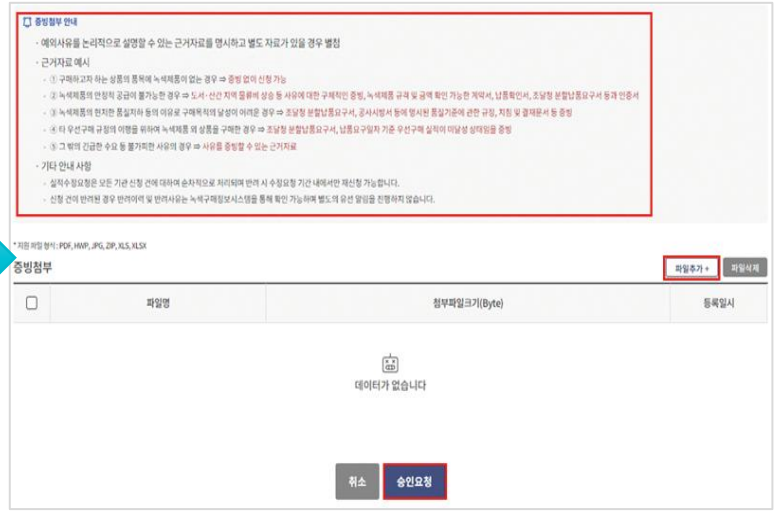


⑦ [파일추가] 클릭하여 작성한 증빙서류 등록

※ 증빙첨부 안내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⑧ [승인요청] 클릭

기존실적 예외요청 신청 | 기존실적 예외요청 수정 및 철회 | 예외요청 자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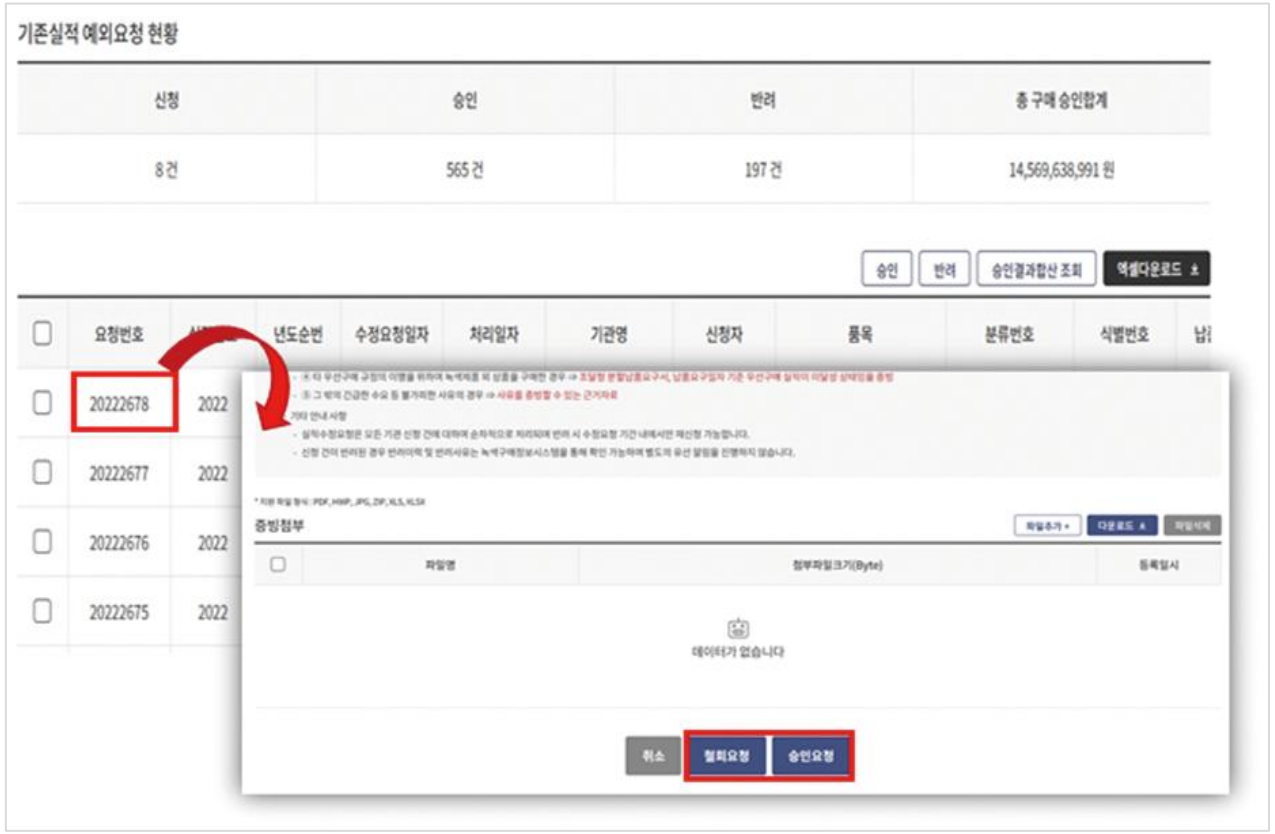


①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녹색구매 예외요청] → [예외요청 현황] → [검색]

※승인요청 수정 및 철회는 '승인요청' 상태일 때 가능하며, 예외요청 현황에서 요청번호 클릭

② 수정 시 : 예외요청 상세내용 수정 후 하단에 [승인요청] 클릭

③ 철회 시: 예외요청 상세내용 확인 후 하단에 [철회요청] 클릭

기존실적 예외요청 신청 | 기존실적 예외요청 수정 및 철회 | 예외요청 자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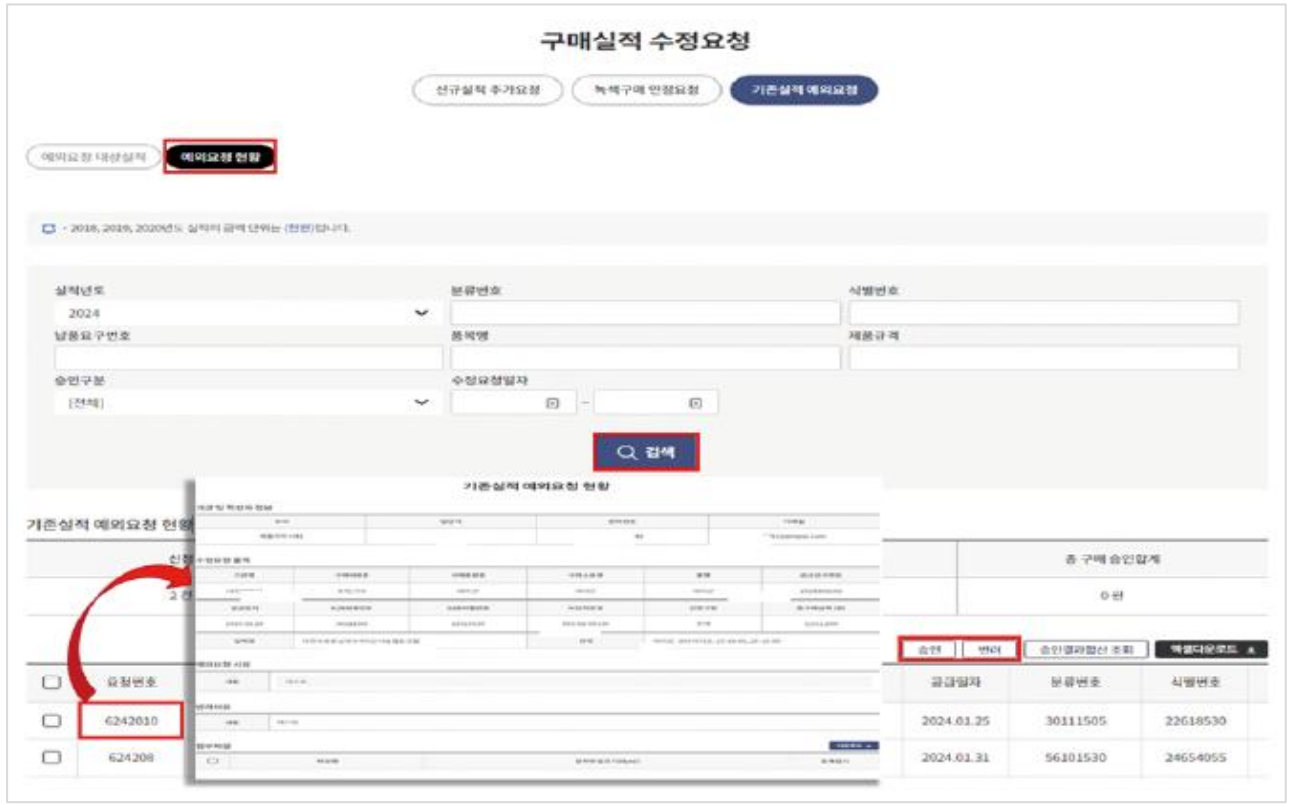


①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녹색구매 예외요청] → [예외요청 현황] → [검색]

② 요청번호 클릭 후 입력 사항 및 증빙자료 검토

③ 현황 하단 [목록] 클릭 → 검토건 선택 후 승인 및 반려 처리

※기존실적 예외요청에 대한 자가관리 도입되어, 신청 기관 담당자가 직접 승인 및 반려 처리까지 완료하여야 함(2023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4년 전체기관 대상 도입)

# 감사합니다.